調査分析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李 哲 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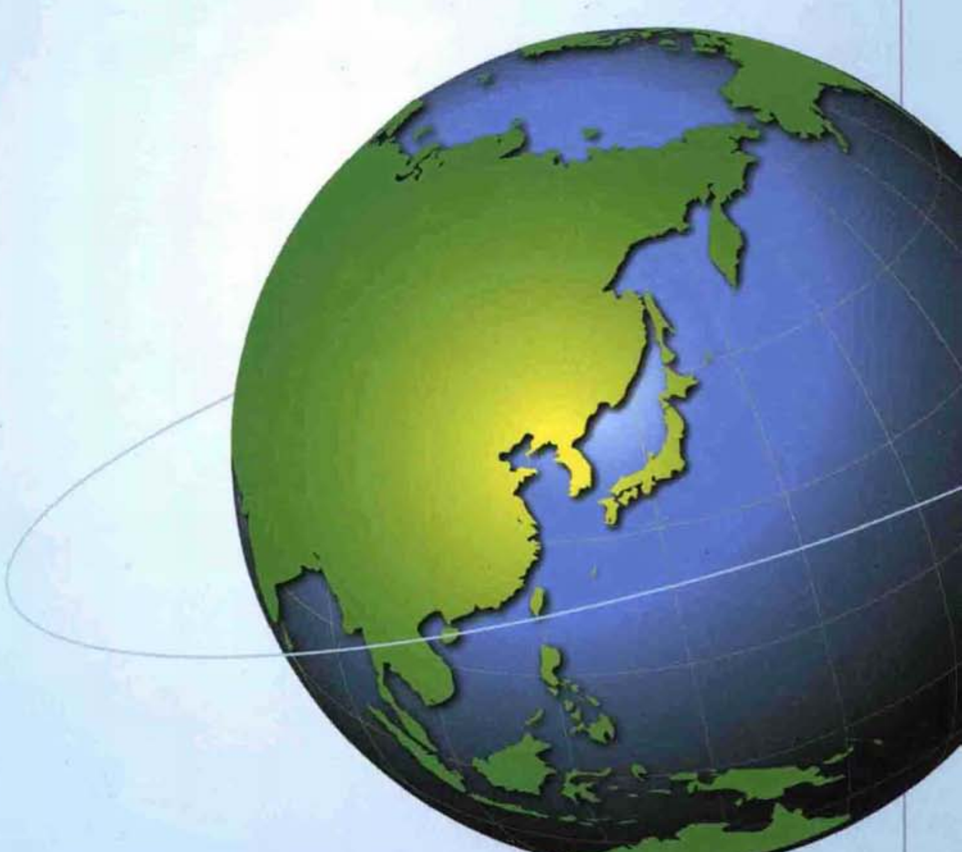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硏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硏究를 주요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지역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 세계지역연구센터 (東北亞팀, 東西南亞팀, 美洲팀, 유럽팀),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東北亞연구개발센터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통상팀과 FTA연구팀, 통일국제협력팀 등 시의적절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 · 단기 硏究報告書, 『KIEP주간세계경제분석』,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 長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硏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02) 3460-1001,1114 / FAX : 02) 3460-1122,1199
URL: http//www.kiep.go.kr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調査分析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李 哲 元

KIEP 對外經濟政策硏究院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언

중 · 동구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었습니다. 중 · 동구 국가들의 각국 정부가 경제체제전환 작업을 전개하면서 부딪힌 가장 커다란 문제중의 하나가 체제전환 초기 은행부문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실채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중 · 동구 지역에서 이와 같은 금융부문의 부실화는 경제개혁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헝가리, 폴란드, 체크 등 중 · 동구 주요 3국은 1990년대 들어 금융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들의 금융부문이 상당부분 선진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동구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지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여타 중 · 동구 국가들의 금융구조조정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신흥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금융환경 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 파악은 그 자체만으로도 동유럽에 관심 있는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로 인해 중 · 동구 주요국 금융환경의 현주소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와 같은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금융구조조정에 적용 가능한 많은 선험적인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IMF, World Bank, EBRD, BIS, OECD 등의 금융통계는 물론 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입수한 통계를 성과분석지표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중 · 동구의 구체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은행민영화 사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헌조사와 함께 현지조사를 병행하였습니다. 헝가리, 폴란드, 체크의 금융구조조정 및 은행민영화 담당 정부부처와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사정을 외국문헌들의 평가와 비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기업인 및 통신원 등을 통해 최근 중 · 동구 지역의 금융여건 개선정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 세계지역연구센터의 이철원 전문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필자는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귀중한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정여천 박사, 윤덕용 박사, 홍유수 박사, 왕윤종 박사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고, 중 · 동구 현지조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KOTRA 현지 무역관의 김형욱 부관장, 김병삼 부관장, 강상엽 과장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중 · 동구 지역의 금융여건 파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12월

院長 李 景 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동구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지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 · 동구 국가들의 금융구조조정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 · 동구 주요 3국 중 은행부문의 부실채권 정리와 은행민영화에 있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금융구조조정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금융부문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적용가능한 선험적인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 경제규모, 경제개혁 추진성과 등의 측면에서 중 · 동구라는 경제권을 대표할 수 있는 헝가리, 폴란드, 체크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금융구조조정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주제에는 중 · 동구 국가들이 체제전환 초기에 추진한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과 같은 금융개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점적인 조사는 그 후에 발생한 은행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각국이 추진한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이루어졌다. 즉, 체제전환과정의 금융부문 부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전개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후에 전개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 금융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개혁의 범주에 포함되는 협의의 개념이다. 하지만 은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 · 동구 주요국들이 선택한 금융개혁 방법이 은행청산 및 면허취소보다는 금융구조조정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측면에서 핵심주제를 금융개혁이 아닌 금융구조조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기간도 전체적으로는 중 · 동구 국가들이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1980년 말부터 체크의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최근까지이다. 그러나 중점연구대상기간은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이 한창 이루어졌던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이며, 체크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이다. 물론 3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전반의 금융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경험,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추진, 그 후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분석 등의 순서로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분석, 정리하였다. 또한 결론부문에서는 향후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 발전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무리하였다.

헝가리, 폴란드, 체크 등 3국 모두 부실여신이 소수 국유은행이나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헝가리는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있어 분권화된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 폴란드와 헝가리가 분권화된 해결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공식적으로 중앙집권적 해결방법이 관료주의적 폐해와 기업 및 은행의 민영화 지연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국이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양국 모두 체제전환 직후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자와 외채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덜한 이 방법을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체크는 통합정리은행(KOB)이라는 은행구조조정기관을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중앙집권적 해결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체크가 이 방법을 택한 것은 체크의 경우 재정 및 외채 상황이 양호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전환 초기 민간경제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은행주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접근방법이 적용된 부실여신 처리문제는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헝가리와 폴란드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실여신의 비율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었던 반면, 체크의 경우에는 아직도 同 비율이 약 19%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체

크는 1996년 하반기 이후 은행위기를 겪었으며, 이는 1997년 5월 통화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체크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 성과가 미진한 것은 부실채권 정리은행이 관련 금융기법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거나 채권시장 등 시장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채권 처리가 지연되어 국가의 재정부담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체크의 경우에서와 같이 KOB에 부실채권을 집중시키는 방법은 문제은행들의 장부상에서는 부실채권을 덜어낼 수 있지만, 이를 헝가리에서와 같이 은행시스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아니다. 즉, KOB가 은행시스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은행으로의 부실채권 이전은 헝가리나 폴란드에서와 같이 부실여신의 즉각적인 감소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를 제도적 측면과 금융지표를 통한 평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3국 모두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회복 측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금융부문의 건전성 개선에 있어서는 헝가리가 가장 좋은 성과를, 그리고 폴란드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린 반면, 체크는 아직도 부실여신 처리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한편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중개능력 향상은 3국 모두 아직까지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은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며, 이는 곧 이들의 대외신인도에도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중 · 동구 주요국 사례에서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운영구조조정(operational restructuring), 재무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 및 제도구조조정(institutional restructuring)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즉, 금융구조조정은 재무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 및 내부지배구조 개혁 등의 운영구조조정과

함께 제도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를 견제하는 제도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금융기관의 성공적인 운영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데에는 민영화 전략이 유효하다. 특히 선진 외국은행을 민영화에 참여시키면 해당 금융기관 운영의 합리화는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이 강화되는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셋째,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구조조정만 추진하면 금융위기의 극복이 지연되거나 위기가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도 기업의 부실이 정리되지 않고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면 이로 인해 다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된다. 체크는 금융구조조정 이후 기업부실이 다시 금융부문의 부실을 야기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폴란드는 기업구조조정을 금융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은행과 공기업의 종합적인 구조조정 계획과 연계시킴으로써 금융구조조정에 성공한 사례로 유명하다.

중 · 동구 주요국은 앞으로 EU 가입을 앞두고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첫째,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은 매우 미약하다. 1998년 기준 OECD 평균 금융부문 규모는 GDP대비 198%인데 비해, 중 · 동구 주요국중 가장 규모가 큰 체크가 GDP대비 90% 정도에 불과하다. 헝가리의 금융부문 규모는 60%를 겨우 넘고 있으며, 폴란드는 5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가입을 염두에 두고 금융관련 제도를 EU 표준에 일치시키고, 은행위기를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하였지만, 아직까지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 금융중개능력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둘째, 금융부문의 구조 또한 선진국에 비해 아주 취약하다. OECD 평균 금융부문 구조는 은행예금이 35%, 주식시장자본이 49%, 채권시장규모가 16%를 각각 전체 금융부문으로부터 담당하고 있다. 반면 금융부문 구조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헝가리는 은행예금이 50%를 초과하고 있고, 주식시장자본이 45%를 다소 상회하고 있으며, 채권시장규모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와 체크의 경우 은행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하였으며,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채권시장규모가 매우 미약하였다. 따라서 중·동구 주요국은 앞으로 금융부문 개발에 있어 예금, 주식, 채권 등 3가지 시장을 조화롭게 활성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아직까지 개선할 여지가 많다. 체크의 경우는 특히 건전성 측면에서 아직 부실여신의 비중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2001년 들어 체크는 그동안 지연되어오던 은행의 민영화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구체제로부터 유래된 정부-은행-기업간 부실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지배구조개선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국내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최근 중·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예대마진의 급격한 축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금융부문은 이자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기존의 은행수익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여 수익선을 다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EU측이 집중적인 개발을 주문하고 있는 분야와 현재 중·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발전단계를 감안하면, 향후 이들 금융부문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금융기관의 내부 및 외부지배구조(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structures)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둘째, 자국내 금융시장의 경쟁 심화는 물론 국제금융시장 참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셋째, 건전

성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금융부문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금융부문의 개발수준에 따라 동구 체제전환국들을 다음과 같이 5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금융부문 개발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는 개혁선도국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포함된다. 둘째는 개혁선도국 그룹을 부지런히 뒤쫓고 있으나, 이에 다소 못미치는 개혁도상국 그룹이며, 여기에는 체크와 슬로베니아가 해당된다. 셋째는 구체제와 신체제가 혼재하고 있는 부분개혁국 그룹이며, 크로아티아와 슬로바키아가 이 그룹에 속한다. 넷째는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개혁실패국 그룹이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이 금융부문이 제일 취약하여 언제든지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재발위험국 그룹이다.

이처럼 동구 체제전환국들을 금융부문의 개발 정도에 따라 5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 금융여건의 특징들을 분석하면,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자국의 금융부문 수준이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 이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혁이나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가 명확해진다. 따라서 헝가리와 폴란드 등 개혁선도국 그룹의 금융구조조정 사례는 물론 체크의 금융구조조정 진행사항은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향후 자국의 금융부문 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매우 유익한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진한 부분개혁국 그룹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개혁실패국 그룹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헝가리, 폴란드, 체크 등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경험이 귀중한 정책대안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표 차례

그림 차례

Box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 · 동구 12개국, 발틱 3개국 및 CIS 12개국 등 전체 동유럽 27개 체제전환국 가운데 1990~98년 동안 예금인출사태, 은행파산 등의 심각한 금융위기를 한번 이상 경험한 나라는 모두 12개국이다.[1] 이들 가운데 현재 중 · 동구 국가들의 금융부문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3년 EU 가입을 목표로 최근까지 금융부문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헝가리, 폴란드, 체크 등 중 · 동구 주요 3국은 금융산업이 상당부분 선진화되어 있다.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 의하면, 이 중 헝가리와 폴란드의 은행산업은 현재 거의 서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금융구조조정은 채권은행 주도의 채무기업 부실채권 정리, 효과적인 은행민영화 및 선진외국은행의 참여, 기업구조조정과의 병행 등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체크는 금융구조조정 이후 기업부실화가 다시 금융부문의 부실을 야기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동구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지 금융여건의 현주소를 파악함은 물론 향후 여타 중 · 동구 국가들의 금융구조조정 과제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1) 무분별한 국채발행, 환율제도의 경직성에 의한 통화가치의 고평가 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경제위기를 경험한 사례도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이 핵심주제이기 때문에 은행부문의 위기에 의해 경제위기가 발발한 12개국만을 금융위기 경험국가로 정의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ng, Zoli and Klytchnikova(2000)를 참조하기 바란다.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중 · 동구 주요 3국 중 은행부문의 부실채권 정리와 은행민영화에 있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금융구조조정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금융부문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적용가능한 선험적인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 파악은 신흥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금융환경 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동유럽의 신흥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로 인해 중 · 동구 주요국 금융환경의 현주소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와 같은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금융구조조정에 적용 가능한 많은 선험적인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 · 동구 진출을 확대하거나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여타 중 · 동구 국가들이 향후 자국의 금융여건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대체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주요국의 금융여건 개발과정을 통해 인근의 후발 개혁국들의 금융여건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국내자료는 주로 외국의 금융위기 및 금융구조조정 사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추진, 동구의 금융위기 특징을 분석하고 금융구조조정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파악, 중 · 동구의 사례조사에 참조하기 위해 한국의 금융구

조조정 및 금융산업 현황에 대한 다수의 국내문헌을 조사하였다.

중 · 동구 지역을 총괄하거나 각국별로 금융위기 혹은 금융구조조정 사례에 대해 언급된 다수의 외국문헌과 발틱 및 CIS 국가들의 금융위기와 관련된 다수의 외국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중 · 동구의 금융부문 발전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선진국, 여타 체제전환국, 한국 등과 비교할 수 있는 다수의 외국문헌 및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특히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IMF, World Bank, EBRD, BIS, OECD 등의 금융통계는 물론 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입수한 통계를 성과 분석지표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 · 동구의 구체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은행민영화 사례에 대해서는 上記와 같은 문헌조사와 함께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헝가리, 폴란드, 체크의 금융구조조정 및 은행민영화 담당 정부부처와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사정을 외국문헌들의 평가와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현지 기업인 및 통신원 등을 통해 최근 중 · 동구 지역의 금융여건 개선정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였다.

지금까지 중 · 동구 지역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본원을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원에서는 최근까지 중 · 동구의 EU가입 전망과 한국 기업의 진출방안,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현재 동구 체제전환국의 전반적인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본원의 중 · 동구 지역에 대한 연구는 이들 지역의 경제개혁을 금융, 기업, 정부, 노동 등 부문별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이중 금융부문은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헝가리, 폴란드 등의 금융부문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에 대한 분석이 다른 부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97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이후 외국의 금융위기극복 및 금융구조조정 사례는 국내에서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으나, 중 · 동구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진국, 중남미 및 아시아의 신흥시장에 대한 금융위기 사례는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구주제 중의 하나였다. 외국의 금융구조조정 사례에 대한 국내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로 선진국 경험에 대한 벤치마킹과 아시아 및 중남미 사례에 국한되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외국문헌에는 중 · 동구 각국의 금융위기 사례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있으나, 특정국가의 사례에 국한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개괄적인 언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중 · 동구 금융위기 사례에 대한 외국문헌은 불가리아와 같이 주로 위기가 계속 재발되어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중 · 동구 국가들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외국문헌의 연구는 CIS 및 발틱 국가들과 함께 동구의 체제전환국 혹은 유럽의 금융위기경험국과 같은 광범위한 범주에서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인구, 경제규모, 경제개혁 추진성과 등의 측면에서 중 · 동구라는 경제권을 대표할 수 있는 헝가리, 폴란드, 체크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금융구조조정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주제에는 중 · 동구 국가들이 체제전환 초기에 추진한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과 같은 금융개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점적인 조사는 그 후에 발생한 은행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각국이 추진한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이루어졌다. 즉, 〈Box 1〉에서 설명하고 있는 체제전환과정의 금융부문 부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전개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후에 전개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 금융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개혁의 범주에 포함되는 협의의 개념이다. 하지만 은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 · 동구 주요국들이 선택한 금융개혁 방법이 은행청산 및 면허취소 보다는 금융구조조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측면에서 핵심주제를 금융개혁이 아닌 금융구조조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 기간도 전체적으로는 중 · 동구 국가들이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1980년 말부터 체크의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최근까지이다. 그러나 중점연구대상기간은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이 한창 이루어졌던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이며, 체크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이다. 물론 3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전반의 금융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Box 1〉 체제전환과정의 금융부문 부실화

□ 舊사회주의 체제하의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가 체제전환에 따른 금융개혁에 의해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중 ·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 부실화는 당시 부실은행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음.
①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국유상업은행
② 체제전환 초기 은행부문 진출입자유화에 따른 신설 민간상업은행

□ ① 국유상업은행 부실화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인들로부터 기인함.
ⓐ 정부가 국유기업들의 대출상환을 보장해주거나 행정적인 자금배분이 이루어졌던 관치금융의 관행
ⓑ 부실기업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요청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리금을 회전대출 할 수밖에 없는 대출자수동성(creditor passivity)
ⓒ 구체제 시절부터 연유된 企業間 債務(IED:Interenterprise debt)

□ ② 민간상업은행 부실화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원인들로부터 기인함.
ⓐ 허술한 진출입 여건으로부터 기인한 빈약한 자본금 규모
ⓑ 기업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기법 미비

□ ①과 ②의 부실화에 공통으로 적용된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임.
ⓐ 체제전환 초기의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상태 악화
ⓑ 금융감독 강화에 따른 부실여신의 범위 확대
ⓒ 기업들의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금융권의 담보가치 하락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금융위기 경험,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구조조정 추진, 그후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분석 등의 순서로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분석, 정리하고 있다. 또한 결론부문에서는 향후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 발전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무리하고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동구의 舊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추진한 1990~98년 동안 한 번 이상의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12개국의 금융위기 극복경험 가운데 폴란드, 헝가리, 체크 등 중 · 동구 주요국 경험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구 12개국의 금융위기 경험을 개괄한 다음, 중 · 동구 주요국 금융위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의 금융위기 극복전략과 위기극복을 위해 소요된 재정비용에 대해 그 특징을 분석, 정리한다.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에서 문제의 초점은 부실여신이었는바, 제2장 마지막 절에서 중 · 동구 금융위기의 근원인 부실여신의 누증현상과 처리과정을 정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3장에서는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제도구조조정, 운영구조조정 및 재무구조조정 등 3개의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런데 제도구조조정과 운영구조조정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중 · 동구 주요국의 제도적 기반 구축, 건전성 규제 강화, 은행감독체계 강화, 은행민영화 등의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이처럼 먼저 중 ·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제도 · 운영구조조정 현황을 동시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금융구조조정에 있어 실질적인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재무구조조정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중 · 동구 주요국들의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한다. 우선 금융구조조정에 의해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 제도를 얼마만큼 선진화하였으며, 금융제도의 포괄성과 효율성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까지 향상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성과를 살펴본 다음 금융중개기능의 향상,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금융부문에 대한 신뢰도 회복 등 금융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지표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중 · 동구 주요국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는 중 · 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추진과정에서 상당부분 진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 발전전망과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헝가리, 폴란드 등 개혁선도국들의 금융구조조정 경험이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향후 금융부문 발전에 어떠한 시사점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제2장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 경험과 극복과정

한 국가의 금융산업이 건전하다는 것은 금융기관들 자산의 시장가치가 부채의 시장가치를 초과하여 순자산 가치가 正(+)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청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채무를 충분히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채무상환능력(solvency)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2] 그런데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순자산 규모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負(-)의 상태에 있는 불건전 금융기관들은 부실상태가 노출될 경우 신인도 하락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를 우려하여 차입자가 만기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도처리하지 못하고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더하여 부실대출을 늘려가게 되는 貸出者受動性(creditor passivity)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3] 이러한 과정에서 불건전 금융기관은 부족한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수익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소홀한 여신심사하에서 고위험-고수익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불건전 금융기관의 무리한 영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거래기업의 부도, 고객의 예금인출 등으로 유동성부족현상(illiquidity)을 겪게 되고 결국은 지급불능사태(insolvency)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지급불능사태는 전염효과에 의해 다른 불건전 금융기관은 물론 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붕괴시켜 예금인출사태를 확산시킴으로써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한 국가의 금융산업내 상당수 금융기관의 순자산 규모가 負(-)의 상태에서 예금인출사태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어, 이를 수습하

---

2) Kane(1985).

3) OECD(1995), pp. 100-101.

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상태를 금융위기로 정의할 수 있다.[4)]

舊사회주의체제에서 동구 체제전환국들의 금융은 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수단이었고, 중앙은행 및 그 산하조직이 금융자원의 배분, 기업과의 금융거래, 외환업무 등을 총괄하는 체제가 유지되었다. 이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취약한 기존 금융제도로는 시장경제개혁을 뒷받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구 각국 정부는 금융부문의 대폭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체제 및 체제전환과정에서 누적된 막대한 부실채권과 전문인력의 부족, 금융관련 법체계의 부재 등 각종 공산체제의 유물은 이들 국가에서 효율적인 금융체제 구축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이로 인한 은행부문의 부실화는 여타 경제개혁 작업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중 · 동구, 발틱 및 CIS 등 동구의 27개국 가운데 12개국이 체제전환 이후 은행의 과도한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예금인출사태 및 은행의 파산 등으로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되는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

본 장에서는 동구의 舊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추진한 1990~98년 동안 한번 이상의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12개국의 금융위기극복경험 가운데 중 · 동구 주요국 경험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금융위기의 경험이 있는 동구의 12개국에는 중 · 동구의 불가리아, 체크, 헝가리, 마케도니아, 폴란드 등 5개국, 발틱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3개국과 CIS의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동구 12개국의 금융위기 경험을 개괄한 다음, 중 · 동구 주요국 금융위기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의 금융위기 극복전략과 위기극복을 위해 소요된 재정비용에 대해 그 특징을 분석, 정리한다.

중 · 동구 주요국 정부가 경제체제전환 작업을 전개하면서 부딪힌 가장

4) Sundararajan and Balino(1991).

커다란 문제중의 하나는 은행부문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은행부문의 부실화는 경제개혁 추진의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5] 결국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에서 문제의 초점은 부실여신[6]이며, 따라서 본 장 마지막 절에서는 중 · 동구 금융위기의 근원인 부실여신의 누증현황과 처리현황을 정리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 경험

가. 동구 12개국의 금융위기 경험 개관

중 · 동구의 금융위기는 은행권의 부실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는 체제전환 초기 혹은 체제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활성화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들이 중 · 동구의 전체 금융산업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 · 동구의 금융위기는 일반적으로 은행위기(banking crisis)라 지칭하기도 한다.

동구 체제전환국의 금융위기는 12개국이 모두 한번 이상의 금융위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형태가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유래한 부실여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국유은행 혹은 舊국유은행의 지급불능

5) 헝가리와 체크는 각각 1994년 말과 1997년 5월에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한 바 있다.

6) 자산건전성 분류방법에 따라 여신을 분류하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을 일반적으로 부실여신이라 한다.

사태로 인한 위기이다. 1991~94년 불가리아, 1991~93년 체크 및 1992~94년 헝가리의 등의 금융위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체제전환 이후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된 동구 각국의 국유상업은행들은 시작부터 상당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과거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정부가 국유기업들의 대출상환을 보장해 주거나 행정적인 자금배분을 통해 대출금이 상환되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는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기업대출이나 보조금 등이 중단 또는 삭감되었다. 이와 함께 舊코메콘체제의 붕괴와 급격한 경제개혁에 따른 생산감소 등으로 기업의 수익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기업의 대출상환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들의 자산구성은 더욱 취약해졌으며, 은행부문 부실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은행의 자산구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은 舊체제시절부터 연유된 기업간 채무(IED:Interenterprise debt)이다. 예를 들어 기업 A가 기업 B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업 B는 기업 C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 연쇄적으로 은행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추가대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기업간 채무 중 일부는 기업 자체의 노력에 의해 해결되기도 하였으나, 상당부분은 은행들에 대한 기업들의 純채무로 남게 되었다.[7]

동구 금융위기의 두 번째 형태는 전환기 새로운 제도 및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신규 상업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로 인한 위기이다.[8] 체제전환 이

7) Begg(1996), pp. 211~212. 韓貞澈(1998), 222면에서 재인용.

8) 여기에는 1996~97년 불가리아, 1995~97년 헝가리, 1994년 마케도니아, 1993~94년 폴란드, 1992~94년 에스토니아, 1995년 라트비아, 1995~96년 리투아니아, 1996~97년 체크, 1995~97년 그루지아, 1994~96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등의 금융위기가 포함되며, 새로 도입된 은행제도에 대한 적응실패가 주요 원인이 되었던 1994년 그루지아와 1995~98년 우크라이나의 금융위기도 이 범주에 속한다.

〈표 2-1〉 동구 금융위기 경험국의 부실여신[1)] 비율(%)

(단위: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말 기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중·동구										
- 불가리아			7	7	13	15	13	12	18	11
- 체크	2	19	23	37	27	22	20	20	22	19
- 헝가리		21	30	20	12	9	5	7	4	3
- 마케도니아			80		44	22	21	8	9	27
- 폴란드	16	30	36	34	24	15	12	12	15	16
발틱										
- 에스토니아			7	4	2	2	2	4	3	2
- 라트비아			5	11	19	20	10	7	7	5
- 리투아니아				27	17	32	28	13	12	11
CIS										
- 그루지아	11	13	10	24	40	6	7	7	5	6
- 카자흐스탄					15	20	6	5	6	2
- 키르기즈스탄	10			92	72	26	8	1	6	16
- 우크라이나				5	13	12	11	35	34	33

주: 1)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s)임.

자료: EBRD(2001), OECD(1996), IMF(1999) 및 각국 중앙은행 발표자료.

후 신설 상업은행들 역시 빈약한 자본금규모와 기업의 부실화로 대출채권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었다. 또한 체제전환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실화되었고,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노하우를 축적할 기회가 없었던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체제전환과정에서 기업부실화가 심화된 것은 각종 정부보조금의 축소 또는 폐지, 노후된 설비와 낙후된 기술수준, 高금리로 인한 금융비용부담 증가, 환율 급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코메콘체제 붕괴에 따른 대외수출격감 등에 기인하였다.

총여신에서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환되지 않은 부실여신(non-performing loans)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금융위기 당시 은행부문 부실

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前述한 2가지 형태의 금융위기 가운데 첫 번째 형태의 舊체제로부터 물려받은 부실여신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헝가리가 21%, 체크가 50～66%에 달하였다. 두 번째 형태인 신설 상업은행의 부실여신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그루지아의 40%로부터 1994년 키르기즈스탄의 90%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폴란드, 체크와 같은 중 · 동구 국가들에 있어 두 번째 형태의 부실여신은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부실여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점차 그 규모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나.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

본 연구의 중점연구대상인 헝가리, 폴란드, 체크 등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 경험도 이미 산발적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前述한 2가지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중 · 동구 주요국의 경우, 첫 번째 형태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두 번째 형태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여타 동구 국가들에 비해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위기 정도가 훨씬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 첫 번째 형태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도한 정책의 실패가 두 번째 형태의 위기극복에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

헝가리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4번의 은행위기를 경험하였다. 첫 번째 위기는 1991년에 발생하여 1992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국영은행들이 지급불능사태에 처함과 동시에 은행시스템內 부실여신의 비율이 20.7%로 급증하였다. 1993년부터 1994년 사이의 두 번째 위기는 국영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가 다시 재발하면서 발생하였다. 그 여파로 부실여신 비율 또한 30%에 근접함으로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1995년에 발생한

세 번째 은행위기에서는 국영은행 Agrobank가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였다. 이때까지 헝가리의 은행위기는 모두 국영은행들이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발생한 1997년의 네 번째 은행위기에서는 헝가리의 2大 소매금융은행 Postabank가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하였고, 소규모 민영은행들이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였다. 즉, 대규모 은행민영화 이후 적응에 실패한 일부 민간은행들이 처음으로 은행위기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폴란드도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4번의 은행위기를 경험하였다. 1991년 4개의 국영은행들이 심각한 환차손에 직면하면서 첫 번째 은행위기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1989년 평가절하에 기인한 것이었다. 첫 번째 은행위기에 대해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1992년에 국영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가 재현되는 두 번째 은행위기가 발생하였다. 그 여파로 은행부문의 부실여신 비율은 30%에 달하였다. 중앙은행으로부터 특화된 2개의 국영은행들이 1994년까지 지급불능사태에 거듭 직면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폴란드의 세 번째 은행위기이다. 마지막 위기는 1994년부터 소규모 농협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s banks)들이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한 것으로서 이는 1998년에 되어서야 사태가 진정되었다.

체크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헝가리와 폴란드보다는 적은 2번의 은행위기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는 체크가 헝가리와 폴란드에 비해 은행부문이 건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위기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오랫동안 은행부문의 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크게 두 번의 위기로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앞에서 설명한 2가지 형태의 위기가 전형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바로 체크의 은행위기이다. 1991년 들어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유래한 부실여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국영은행들이 지급불능사태에 처하면서 은행들의 부실여신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4년 7월 건전성 분류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이후 부실여신 비율은 37%에 달하였다. 1996년에 발생한 두 번째 위기는 전환기

새로운 제도 및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신규 상업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로 총 18개 은행들이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거나 유동성위기에 직면하였다.

2. 동구 체제전환국의 금융위기 극복전략과 재정비용

가. 금융위기 극복전략

1990~98년 동안 금융위기를 경험한 동구의 12개 체제전환국들은 각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9] 첫째는 불가리아, 체크, 헝가리, 마케도니아, 폴란드 등 중 · 동구 국가들이 주로 채택한 자본확충(recapitalization)을 비롯한 광범위한 은행의 구조조정(restructuring)에 의한 금융위기의 극복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대규모 은행청산이다. 이는 주로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등 CIS 국가들이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3국이 채택한 은행의 청산과 구조조정의 적절한 조합에 의한 금융위기 극복전략이다.

이처럼 동구의 각국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3가지의 서로 다른 전략을 채택한 것은 체제전환의 시작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초기조건이 달랐기 때문이다. 첫째는 체제전환을 시작하는 시기의 거시경제상황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서로 다른 금융위기 극복전략을 채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CIS와 발틱 국가들은 체제전환초기에 극심한 超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舊체제로부터 물려받은 부실채권의 실질가치가 극적으로 축소되었다. 반면에 중 · 동구 국가들에서는 CIS 및 발틱 국가들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超인플레이션은 발생하

9) Tang, Zoli and Klytchnikova(2000).

지 않았다. 그리고 은행부문이 舊체제로부터 비교적 많은 부실여신의 부담을 안고 체제전환을 맞이하였다. 둘째 초기조건은 은행시스템의 개발정도이다. CIS 및 발틱 국가들은 체제전환초기 소규모의 은행들이 급격하게 양산되었으며, 이들의 자본규모 및 자금중개비중은 매우 미미하였다. 반면 중 · 동구 국가들은 CIS 국가들에 비해 체제전환초기에 은행시스템이 비교적 개발되어 있었다. 또한 일련의 은행간 통합과정을 거쳐 은행들이 대형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CIS 국가들은 다수의 소규모 은행청산에 따른 정치 · 경제적 비용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청산이라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청산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기에는 이에 따른 정치 · 경제적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중 · 동구 국가들은 은행의 구조조정이라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었다.

나. 위기극복에 소요된 재정비용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어떠한 전략은 채택하는가는 위기극복에 필요한 재정비용의 규모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림 2-1〉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이 은행구조조정에 지출한 비용과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합한 총재정비용을 GDP 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대규모 은행청산이라는 전략을 채택한 CIS에 비해 은행구조조정이라는 전략을 채택한 중 · 동구 국가들의 금융위기극복비용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청산의 경우 예금자가 일정부분의 정부보상을 제외하고는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구조조정은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 매입 등에 있어 정부의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또한 정부가 매입한 부실여신 중 사후적으로 회수된 부분은 정부의 재정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 전략에 따른 금융위기극복비용이 청산의 경우보다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2-1〉 동구 체제전환국의 총 금융위기 극복비용(1991~98년)

(단위: GDP 대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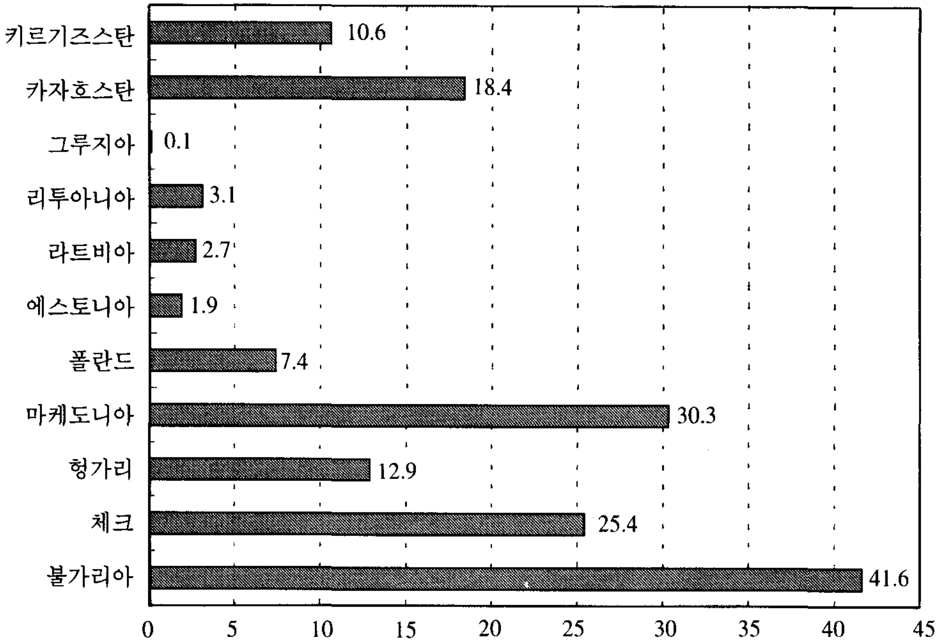

자료: Cull(1998) & Garcia(1999).

여기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청산과 구조조정의 적절한 조합전략을 채택하였던 발틱국가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비용이 비교적 적었다는 것이다. 즉, 회생불가능한 은행들을 과감하게 청산시키고 회생가능한 은행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킴으로써 재정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물론 부실의 정도, 위기의 기간 및 재발횟수 등이 금융위기극복비용의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적절한 위기극복전략에 의해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하고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발틱 국가들이 GDP의 1.9~3.1% 정도의 재정비용만을 지출한 것은 분명 금융위기 극복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10]

10) 발틱 3국의 금융위기 극복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Fleming, Chu and Bakker(1996) 참조.

〈Box 2〉 발틱3국의 은행위기 극복경험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3국은 은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부실은행들에 대해 청산과 금융구조조정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위기극복에 소요된 재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 CIS를 포함한 동구 26개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에 대한 EBRD의 평가에 의하면, 2000년 말 현재 에스토니아(EBRD평점 4-)의 은행부문은 헝가리(同 4)에 이어 두 번째로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라트비아(同 3)와 리투아니아(同 3)도 폴란드(同 3+)와 체크(同 3+) 다음으로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됨(〈표 4-7〉 참조).

- 에스토니아의 경우 은행위기극복에 소요된 재정비용이 GDP 대비 1.9%에 불과하였으며,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각각 同 2.7%와 3.1%에 머물러 폴란드(同 7.4%), 헝가리(同 12.9%), 체크(同 25.4%)에 비해 훨씬 적은 재정비용으로 위기를 극복함(〈그림 2-1〉 참조).

□ 이러한 발틱3국 은행위기극복사례의 특징으로는 부실은행의 특성을 분류한 청산과 회생지원 조치의 차별화, 강도 높은 은행통합화와 민영화 추진, 외국은행들에 대한 과감한 진출입 개방 등을 들 수 있음.

- 부실경영이 문제의 근원인 경우에는 청산, 일시적인 외부충격이 부실의 원인인 경우에는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지원이 기본 원칙이었으며, 대체로 민간은행들은 청산, 국유은행들은 회생지원, 혹은 소규모 은행들은 청산, 대규모 은행들은 회생지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금융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회생지원 은행들에 대해 은행통합화와 민영화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 에스토니아의 경우 1994년 22개에 이르렀던 은행의 수가 1998년에는 6개로 줄어들었고,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1993년부터 1998년 사이에 은행 수가 각각 62개에서 27개로, 26개에서 10개로 축소됨.

- 에스토니아의 경우, 스웨덴 은행들이 은행부문 총자산의 85%를 점하고 있는 2개 대형은행의 최대 주주이며, 라트비아는 총 27개 은행 가운데 2개만이 국유은행이고 외국인 소유의 은행이 15개에 달함.

3. 부실여신 처리과정

일국의 부실채권 처리는 해당국가의 은행부문을 비롯한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중·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우에는 은행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앞서 국가재정, 국유은행, 국유기업 3자간의 역할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국유기업들은 구체제시절 그들이 기여하던 사회복지기능(social welfare functions)을 수행하지 않고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국유은행들은 국가재정 및 국유기업(특히 부실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준재정적 기능(quasi-fiscal function)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중개·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재정은 더 이상 은행과 국유기업들의 과세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을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11)]

이러한 정부·은행·기업 3자간의 역할 재정립문제는 결국 체제전환국가들의 은행 및 기업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Sheng(1996)은 체제전환국 정부가 이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12)] 이 중 주요한 사항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은행권의 부채구조를 조정하는데 있어 중앙집권적(centralized)인 해결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혹은 분권화된(decentralized) 해결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둘째, 부실기업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을 은행주도로 할 것인지, 국가주도로 할 것인지, 셋째, 은행의 구조조정을 기업보다 먼저 추진할 것인지, 이후에 할 것인지 등이다.[13)]

11) McKinnon(1991) 참조.

12) Sheng(1996), pp. 61~63.

13) 이외에도 Sheng(1996)에서는 은행 및 기업의 손실규모를 貯量개념(stocks)으로 정의할 것인지, 혹은 流量개념(flows)으로 할 것인지,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사실 은행 및 기업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해당국가의 초기여건과 금융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설계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점은 은행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실채권 처리비용이 그 나라의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과 거시경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재정으로 흡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동구 국가들이 재정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가 부실채권의 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은행부문의 막대한 부실여신으로 은행위기 상황에 직면했던

〈표 2-2〉 부실여신의 처리방안

방 안	처 리 방 법	기대효과 및 부작용
예금주식화 (Deposit-Equity Swap)	은행예금의 상당부문을 은행의 지분청구권으로 전환하는 방법	- 은행민영화 촉진 - 예금과 지분과의 교환이 강제될 경우, 공정성 문제, 금융체제에 대한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실적개선 없이 통화공급의 감소를 야기
채무주식화 (Debt-Equity Swap)	은행이 안고 있는 악성채무를 기업의 지분과 교환	- 은행이 기업지분을 상당부분 소유하게 됨 - 부실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은행 부실채권 개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
채무채권화 (Debt-Bond Swap)	부실채권을 정부보증 채권 혹은 민영화기금 청구권과 교환	- 부실채권의 범위 문제 및 정치적 타협 여지(즉, 차기정권에 부담을 떠넘기는 효과 발생)

자료: Caprio and Levine(1994), 한정철(1998)에서 재인용.

은행의 적정한 역할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여타 국가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부실채권 처리방안이 적용되었다. 즉, 예금주식화 방식(deposit-equity swap), 채무주식화 방식(debt-equity swap) 그리고 채무채권화 방식(debt-bond swap)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당초 체제전환 초기 국제금융기구나 외국전문가들은 이 지역 국가들에게 이러한 방식들을 권고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가. 부실여신 누증현황

체제전환 이후 부실채권규모가 급증한 첫 번째 시점은 실제 부실채권이 발생한 시기라기보다는 자산에 대한 건전성 기준이 강화된 시점이다. 즉, 정부가 부실채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첫 번째 조치를 취한 시점이 부실채권의 급증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이들 주요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초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1993~94년이 가장 높은 부실여신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때부터 국제기준에 근접한 자산건전성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1) 헝가리

헝가리는 중 · 동구 舊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했다. 이원적 은행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구체제시절인 1987년이다. 이후 1990년까지 매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는 은행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 기간중 정부차원의 특별한 지원은 하지 않았다. 단지 개별 은행이 부실여신 전담반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부실여신을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였다.

그러나 체제전환 직후 국내경기 침체와 舊코메콘체제의 붕괴로 대기업

〈그림 2-2〉 중 · 동구 주요국의 부실여신[1] 비중 추이

(단위: %, 전체여신에서 차지하는 부실여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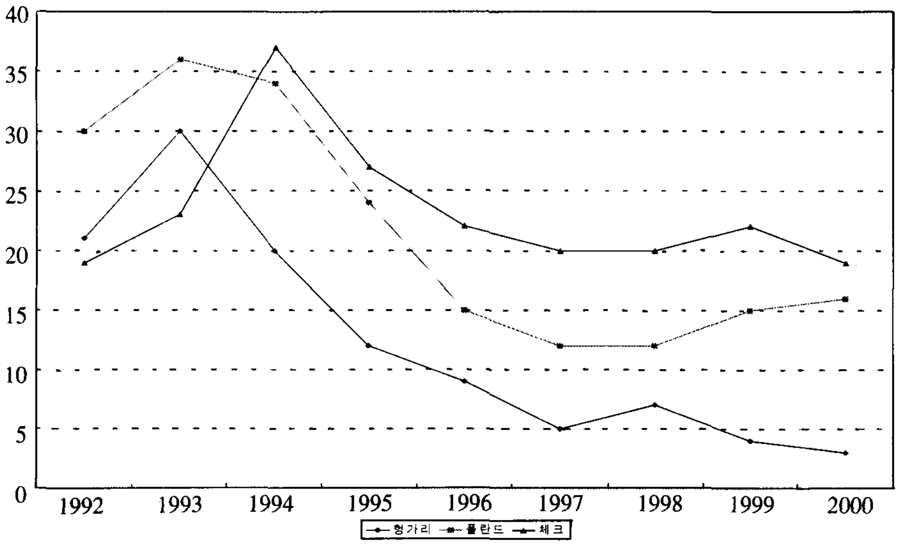

주: 1)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s)임.

자료: EBRD(2001), OECD(1996), IMF(1999) 및 각국 중앙은행 발표자료.

들의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1987년 0.4%이던 총여신에 대한 부실여신 비율이 1991년에 7.1%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말 정부는 舊체제하에서 대출된 부실여신의 50%를 보증해주겠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1992~93년 중 은행권의 부실여신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1991년 12월 개정 은행법 및 회계법의 발효로 여신분류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헝가리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정상(standard),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악성(bad) 등 4단계 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1992년 4월 강도 높은 파산법이 발효됨에 따라 은행권의 부실여신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同 충당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파산법 발효로 기업부도시 지체없이 소송을 통해 同 기업을 처분이나 파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동퇴출(automatic trigger)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同 법 시행 이후 부도기업 수가 급증하였다.[14] 자동퇴출 제도가 기업부도를 촉진시킨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어지고, 경제에의 충격을 가라앉히기 위해 정부는 同 제도를 1993년 중반 폐지하였다.[15]

2) 폴란드

여타 舊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은행권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대부분은 부실 國有企業들에 의해 발생된 것이며, 이 중 일부는 구체제시절부터 안고 있었던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1992년 9월 기준으로 국유기업이 은행권에 지고 있던 채무 75억 달러 가운데 약 67%가 과거 중앙은행 지점이었던 9개 국유은행에 대한 것이었다.

〈그림 2-2〉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것처럼, 폴란드의 전체여신에서 차지하는 부실여신 비율은 체제전환 직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타 舊사회주의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1990~91년 사이의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 도산이 급증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6] 1992년 중 이루어진 국제회계법인들의 감사결과, 1991년 말 기준으로 부실여신비율이 가장 낮은 은행의 여신 중에서는 9%가 회수의문 내지 추정손실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부실여신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의 경우에는 전체여신의 60%

14) OECD(1995), pp. 96~97.

15) 이 제도가 시행중이던 1992년 2/4분기~1993년 1/4분기 중 분기별 부도업체는 평균 400여개에 이르렀으나, 폐지 이후에는 분기 평균 100여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1989년 88개이던 폴란드의 부도기업 수는 1991년 2,880개로, 1993년에는 4,95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가 회수의문 내지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여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Wyczanski (1993)에 따르면, 1989~90년 사이 국유은행들에 대한 불량채권자의 수는 무려 6배나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 1년간은 다시 5배, 1992년에는 또다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992년 말경에는 全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무려 20억 달러(40조 즐로티)에 이르렀다.[17]

3) 체크

체크 역시 인근의 여타 舊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전환 직후 은행권의 부실채권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舊체제시절의 일원적 은행제도 해체로 신설된 국유상업은행들이 정부의 부실채권 탕감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떠안은 상태였다. 또한 체제전환 이후 신설된 소규모 민간은행들이 시장점유율 확보 차원에서 무분별한 대출을 행함으로써 부실자산을 축적시켰다. 즉, 체크의 경우에는 대규모 및 소규모 민영화 과정에서 무분별한 대출이 행해졌으며, 연쇄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신설 기업들의 투자프로젝트 재원조달 과정에서 막대한 부실여신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체크의 금융부문은 舊체코슬로바키아가 1993년 1월 1일부로 체크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됨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결국 체크는 인근국가들과는 또다른 복잡한 체제전환 과제에 직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부적절한 시장관리 등이 겹치면서 새로운 부실여신이 양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기준이 1992년 중반 이후 적용되기 시작했고, 보다 세분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1994년 말 본격 적용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분류기준의 적용으로 체제전환 초기 드러나지 않던 은행부문의 부실여신비율이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 1994년 이후 체크 은행들의 대출자산은 5가지 범주로 분류되고 있

17) Wyczanski(1993).

18) 체제전환 초기, 회계 및 여신분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 은

으며, 이에 따라 총여신에 대한 부실여신의 비율은 1994년 말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히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이는 체크가 은행위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 부실여신 처리과정

체제전환 이후 급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헝가리, 폴란드, 체크 등 중·동구의 개혁선도국에서는 정부채권으로 부실여신을 인수하는 이른바 채무채권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실적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은행권의 부실여신을 기업지분과 교환하는 채무주식화 방식도 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대상국인 3국 모두 특정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실채권을 탕감하는 은행들을 보상하고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채권을 자본금 출자형태로 공급하는 자본금확충(recapitalization)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소규모 민간은행들은 청산이나 폐쇄되었고, 정치적 저항이 큰 대형은행에 대해서는 조건부증자(conditional recapitalization)라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상기 3개국은 모두 각기 다른 접근방식으로 부실여신 처리방법을 모색하였다. 부실여신 처리에 가장 먼저 주력하였던 헝가리는 처음에는 중앙집권적인 방법을 모색하다가 부실채권의 처리실적이 극히 부진하자, 빠르게 분권화된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폴란드는 처음부터 분권

행부문의 부실채권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이유로 체크 중앙은행(CNB)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당시의 공식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다. Stepanek et al.(1995)에 따르면 체제전환 직후 체크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총여신의 약 60%에 이르는 4억 코루나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Vojtisek(1993)에 따르면, 舊체코슬로바키아 은행 총자산의 약 50%를 회수의문여신으로 추정하였다.

〈표 2-3〉 중·동구 주요국의 부실여신 처리방법

구 분	중앙집권적 방법	분권화된 방법
폴란드		□ 기업·은행구조조정프로그램(Enterprise and Bank Restructuring Program; EBRP) - 1993년 10개 은행의 자본금 확충 위해 추진 - 은행 내 부실여신 전담반 설립 유도 - 구조조정 이행을 조건으로 은행구조조정기금(Bank Restructuring Fund)을 통해 구조조정채권 교부 - 은행주도로 부실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헝가리	□ 신용통합기금(Credit Consolidation Fund) - 1992년 헝가리 산업개발은행(MBFB Rt)에 창설 - 당시 은행부실자산의 1/3정도만 인수되는 등 실적 부진	□ 부실여신통합프로그램(Consolidation program for non-performing loans) - 14개 일반은행과 78개 저축조합의 보유 부실여신을 정부채권으로 교환(1992년) □ 은행통합프로그램(Bank Consolidation Program) - 구조조정채권을 통해 신주발행분을 인수하거나 가교은행을 통해 납입자본금이나 후순위채권을 지원→자본금 확충(1993년) - 은행 내 부실여신 전담반 신설
체 크	□ 통합정리은행(Konsolidacny Banka; KOB) - 1991년 부실채권처리 전담은행으로 설립 - 은행권의 부실여신을 정부채권 등과 교환해 부실여신을 이전	□ 최근 사적화의 중개제도(London approach)[1] 도입검토

주: 1) 同 제도는 영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우리 나라의 화의제도와 비슷하나 법원이 아닌 정부가 채권은행과 채무기업간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 체결을 중재하여 파산을 피하는 제도임.

자료: Tang, Zoli and Klytchnikova(2000)/한정철(1999) 등을 참고로 필자 작성.

화된 방법을 채택, 부실여신 처리를 각 은행 주도로 추진하였다. 이에 반해 헝가리와 폴란드와 달리, 체크는 부실채권 전담처리은행을 설립하는 중앙집권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였을 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헝가리와 폴란드는 분권화된 방법을, 체크는 중앙집권적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1992년 헝가리가 중앙집권적 방법에서 분권화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켜본 폴란드가 1993년 들어 처음부터 분권화된 방법을 채택한 것은 헝가리의 사례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 헝가리

1992년 초 헝가리 정부는 부실여신의 전담관리를 위해 산업개발은행(MBFB Rt)에 신용통합기금(Credit Consolidation Fund)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무부와의 협상력은 은행들의 부실규모와 비례한다는 구체제적인 발상이 만연해 있어 상기 기금을 통한 중앙집권적인 부실여신 처리실적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에 따라 헝가리 정부는 분권화된 방법으로 전환, 1992년 12월 부실여신통합프로그램(consolidation programme for non-performing loans)을 마련하여 14개 일반은행과 78개 저축조합(savings cooperative)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여신을 정부채권으로 교환해 주었다.

하지만 1993년 들어 은행권의 총여신에 대한 부실여신 비중이 26%에 달하자, 헝가리 정부는 상기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실채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는 부실여신의 추가 인수와 병행하여 은행의 자본금을 증액시키기 위한 은행통합프로그램(bank consolidation programme)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국유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3단계에 걸쳐 8%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즉, 1차 시한인 1993년 말까지는 이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존의 마이너스 상태(평균 -15%)에서 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차 시한인 1994년 5월에는 4%, 최종적으로 1994년 말에는 8%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증자대상은행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정부와 구조조정계약(consolidation contract)을 체결하고, 경영합리화와 민영화를 통한 내부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부실기업들과의 조정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했다. 이 계약을 체결한 각 은행들은 1994년 5월에 이루어진 증자에 따라 구체적인 통합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했다.[19] 정부는 同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은행들의 자본금을 증액시키고 정부가 그 증액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수하였지만, 참가은행의 악성부채를 인수하지는 않았다. 대신, 정부는 은행의 자본금 증액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부실여신 특별전담반(bad-debt-workout department)에 부실자산을 이전토록 하였다. 同 전담반은 인수받은 부실자산을 매각하거나, 채권자들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탕감하는 등 자체적인 부실여신 정리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정부는 본격적으로 이들 은행의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1994년 초, 헝가리 정부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최종 프로그램으로 채무자조정프로그램(debtor reconciliation programme)을 마련하였다. 부실기업의 채무재조정을 위한 同 프로그램은 부실여신 정리가 필요한 1,200개 기업에 대해 부실여신의 매각이나 탕감 등을 통해 은행과 기업간의 채무재조정을 유도하여 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同 프로그램을 통해 1994년에서 1996년 중반 사이 헝가리 은행들은 전체 은행권 자산의 약 11%에 해당하는 악성채무를 매각하거나 탕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헝가리는 부실여신 처리에 있어 우량은행/부실은행(good bank/bad bank) 접근방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1995년 7월 MHB(Magyar Hitel Banka)의 민영화에 적용된 상기 접근방법에 의해 MHB의 부실자산

19) 이는 1993년 12월에 정부와 약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일부 은행들이 제출한 프로그램은 완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은 새로 설립된 자회사 Risk Kft에 모두 이전되었다. 그후 우량은행 MHB는 성공적으로 민영화되었으며, 부실은행 Risk Kft는 3년 뒤 청산되었다.

2) 폴란드

폴란드 정부는 1992년부터 10개 주요은행의 부실여신을 정리하고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은행구조조정프로그램(Enterprise and Bank Restructuring Program; EBRP)을 1993년 2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0개 은행은 구조조정프로그램에서 처리해야하는 총부채의 약 3/4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제시절 중앙은행 지점이던 9개 국유상업은행[20] 중 7개 은행과 과거 특수은행 역할을 수행하던 PKO BP(주택·저축은행), PKO SA(외환예금은행), BGZ(식량경제은행 혹은 농업은행) 등 3개 은행이 대상이 되었다. 同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이들 은행들은 각기 부실채권 전담반을 설립하고,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은행구조조정기금(Bank Restructuring Fund)[21]을 통해 구조조정채권을 교부받았다.

또한 EBRP는 은행과 국유기업간의 금융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담고 있었다. 同 프로그램은 부실기업들에 대한 신규대출을 완전히 금지하였고, 이를 투명하게 실천하기 위해 은행들은 국제적인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자신들의 자산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은행들은 부실채권 전담반을 설립하고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했다. 이를 위해 각 은행들은 해당 채무기업들과 다음과 같은 5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했다. 첫째는 법원 또는 은행과 조정협정 체결을 통해 채무의 기한을 조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채무자가 최소 3개월 이내에 부채

20) Bank Slaski, Wielkopolski Bank Kredytowy, Bank· Przemyslowo-Handlowy, Pomorski Bank Kredytowy, Powszechny Bank Kredytowy, Bank Zachodni, Bank Gdanski, Bank Depozytowo-Kredytowy, Powszechny Bank Gospodarczy.

21) 同 기금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자금으로 마련되었다.

를 완전 상환하는 것이며, 셋째는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민영화법을 근거로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거나, 국유기업법을 근거로 청산 과정에 진입, 국유기업을 폐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막 신설된 채권시장(secondary debt market)에서 부실여신을 할인 매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5가지 방법에 따라 각 은행들은 565건의 조정절차(conciliatory procedures)에 착수하여 1996년 3월말까지 전체여신의 29%에 해당하는 채무조정협정을 매듭지었다. 일부는 원리금에 대한 채무재조정(rescheduling) 협상이 체결되었으며, 일부는 양허(concessions)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체 부채의 13%에 대해서는 상환이 재개되었으며, 15%의 부채는 그 액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장에 매각되었다. 대상여신 중 27%의 여신은 민영화 혹은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3) 체크

체크 정부는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자본금을 확충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1991년 3월 부실채권처리 전담은행을 설립하였으며, 부실여신의 보증, 후순위채권의 발행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정부는 은행의 자본금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은행의 부채를 정부의 금융자산과 교환해 줌으로써 同 부채를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1991년 3월 특수금융기관인 통합정리은행(Consolidation bank: Konsolidacni banka; KOB)을 설립,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케 했다. 정부는 부실채권 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첫째는 국가자산기금(NPF: National Property Fund)[22]의 수입을

22) 국가자산기금은 舊체코슬로바키아연방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1991년 정부가 설립한 과도기구로, 철도 · 체신부문 등을 제외한 모든 국유기업의 정부지분을 관리하고 있다.

이전시킴으로써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재정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1991~2000년 KOB의 여신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보면, 체크의 KOB를 통한 부실여신의 처리과정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KOB의 여신은 크게 구체제여신과 신체제여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제여신은 말 그대로 체제전환 이전에 발생하여 체제전환 뒤에도 계속 체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여신들을 말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TOZ 여신[23)]을 들 수 있다. 1991년 801억 코루나(약 27억 달러[24)])로 시작한 구체제여신은 1992년에 다소 증가하였다가 1995년까지 미약하나마 부분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져 점차 감소하였다. 1996년부터는 추정손실처리가 이루어져 2000년에는 485억 코루나까지 줄어들었다. 1996년 구체제여신 중 83.6%가 부실여신, 65.3%가 추정손실이었는데, 2000년에는 100% 부실화되었으며, 추정손실도 99.2%에 달하였다. 반면 체제전환이 추진된 이후에 발생한 신체제여신은 1993년부터 KOB로의 이전이 시작되었다. 신체제여신은 1996년 은행위기가 1997년 통화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1,392억 코루나(약 36억 달러[25)])에 달했다. 1996년 은행위기 당시 74.7%에 달했던 신체제여신의 부실여신비율은 그후 40~50%대로 낮아졌으나, 20%대 정도에 머물렀던 추정손실률은 오히려 40%대로 증가하여 부실여신의 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처럼 KOB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부실여신 처리에도 불구하고 체크 은행시스템 전체의 부실여신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KOB로 이전되는 부실여신의 규모는 1999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까지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또한 KOB로 이전된 부실여신 중 추정손실의 비

23) TOZ(Trvale se Obracejici Zasoby) 여신은 舊체제시절 중앙은행이 국유기업에게 만기없이 6%의 금리로 빌려준 대출금으로 1991년 말 공식 폐지되었다.

24) 1991년 평균공식환율 1달러당 30코루나로 추계하였다.

25) 2000년 평균환율 1달러당 38.6코루나로 추계하였다.

〈표 2-4〉 체크 KOB의 여신포트폴리오 추이

(단위: 10억 코루나, %)

연 도	구체제여신			신체제여신			총여신		
	총규모 (금액)	부실여신 (금액/비중)	추정손실 (금액/비중)	총규모 (금액)	부실여신 (금액/비중)	추정손실 (금액/비중)	총규모 (금액)	부실여신 (금액/비중)	추정손실 (금액/비중)
1991	80.1[1)]			-			80.1[1)]		
1992	81.2[1)]			-			81.2[1)]		
1993	74.6			2.3			76.9		
1994	67.9			10.3			78.2	46.2/59.1	39.5/50.5
1995	63.8			13.6			77.4	48.3/62.4	41.3/53.4
1996	60.8	50.8/83.6	39.7/65.3	18.2	13.6/74.7	4.3/23.6	79.0	64.4/81.5	44.0/55.7
1997	59.4	54.6/91.9	44.9/75.6	34.7	14.6/42.1	9.3/26.8	94.1	69.2/73.5	54.2/57.6
1998	58.0	54.7/94.3	51.8/89.3	67.0	35.5/53.0	14.3/21.3	125.0	90.2/72.2	66.1/52.9
1999	53.3	53.3/100	52.4/98.3	107.5	72.2/67.2	52.7/49.0	160.8	125.5/78.0	105.1/65.4
2000	48.5	48.5/100	48.1/99.2	139.2	74.3/53.4	56.0/40.2	187.7	122.8/65.4	104.1/55.5

주: 1) 1993년 舊체코슬로바키아가 체크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됨에 따라 체크에 배당된 여신의 비율을 근거로 추계함.

자료: KOB(2001).

중은 1999년 무려 65.4%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아직까지 매우 높은 55.5%에 달하였다. 따라서 2001년 들어 체크 정부는 KOB의 부실여신 처리에 있어서 상업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으로 KOB를 체크통합청(Ceska Konsolidacni Agentura; CKA)으로 개명하여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부실여신 처리에 있어 중앙집권적인 접근방법의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채권은행과 채무기업간 채무변제협정을 유도하는 이른바 사적화의제도(London approach)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CKA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의 대상기업들이 현재 대규모 파산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다.

다. 부실여신 처리방법에 대한 평가

헝가리, 폴란드, 체크 등 3국 모두 부실여신이 소수 국유은행이나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헝가리는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있어 분권화된 해결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실채권이 일부 부실한 대기업이나 경제부문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대체로 이 문제를 전문화된 특수기관에 맡겨 처리하는 중앙집권적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헝가리가 분권화된 해결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공식적으로 중앙집권적 해결방법이 관료주의적 폐해와 기업 및 은행의 민영화 지연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국이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양국 모두 체제전환 직후부터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자와 외채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덜한 이 방법을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체제전환 과정에서 외채위기의 징후를 보인 헝가리의 경우, 외국인매각 방식을 통한 매각수입이 절실했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도 국유기업이나 은행의 민영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양국의 경우 은행들이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여신을 줄여주는 대가로 은행의 부실채권처리 전담반과 부실기업간의 자발적인 부채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반면 체크는 통합정리은행(KOB)이라는 은행구조조정기관을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중앙집권적 해결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체크가 이 방법을 택한 것은 체크의 경우 재정 및 외채 상황이 양호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전환 초기 민간경제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은행주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26) Sheng(1996), p. 65.

각국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접근방법이 적용된 부실여신 처리문제는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면, 헝가리와 폴란드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실여신의 비율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었던 반면, 체크의 경우에는 아직도 同 비율이 약 19%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체크는 1996년 하반기 이후 은행위기를 겪었으며, 이는 1997년 5월 통화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체크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 성과가 미진한 것은 부실채권 정리은행이 관련 금융기법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거나 채권시장 등 시장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채권 처리가 지연되어 국가의 재정부담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체크의 경우에서와 같이 KOB에 부실채권을 집중시키는 방법은 문제은행들의 장부상에서는 부실채권을 덜어낼 수 있지만, 이를 헝가리에서와 같이 은행시스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아니다. 즉, KOB가 은행시스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은행으로의 부실채권 이전은 헝가리나 폴란드에서와 같이 부실여신의 즉각적인 감소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27]

---

27) EBRD(1997), p. 86.

제3장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

1. 금융구조조정 개요

금융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재무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 운영구조조정(operational restructuring) 및 제도구조조정(institutional restructur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구조조정에서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인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위기 경험국이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런데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전성 규제, 회계기준 및 은행감독 등에 있어서의 제도적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 이후 수익성과 건전성이 다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 내부지배구조(internal governance) 개혁 등의 운영구조조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채산성이 없는 자회사와 점포는 과감히 매각하고 조직 및 인원을 정리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핵심분야에 전문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영업계획을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다.

내부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주주에게 경영진 교체 및 減資 등을 통해 부실경영과 이를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경영진과 주주들에게도 향후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했던 부적절한 위험관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고 감사제도도 강화하여 경영진의 무

리한 영업활동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운영구조조정과 제도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내부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내부지배구조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규율, 감독기능 등 외부지배구조(external governance)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시장규율의 강화는 시장원리에 의해 불건전 금융기관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 및 진출입장벽 등을 철폐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경쟁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 및 회계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설립과 인가 또는 대주주 및 경영진 교체시 이들이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불건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감동당국은 건전성 감독 관련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적정자본금의 유지, 리스크 관리제도의 운영 등을 의무화하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절차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사외감사 선임요건 변경 등을 통해 감사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

재무구조조정은 크게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 부채규모 축소 및 자산가치 증대 등 순자산 규모를 증대시키는 대차대조표구조개선방식(stock approach)과 수익증대, 비용축소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손익구조개선방식(flow approach)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본확충(recapitalization)의 방법에는 유상증자, 후순위채발행 등이 있으나, 금융위기시에는 민간부문이 신규 가용자금의 투입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거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부채를 축소하는 방법

으로는 부채의 대종을 이루는 예금의 출자전환, 예금원리금 탕감 및 지급유예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손익구조개선방식은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28]이 있어 운영경비의 절감, 새로운 수익원의 발굴 등 금융기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조정을 위해 이제 남은 마지막 방법은 자산가치를 증대시켜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대출금의 회수노력을 강화하여 이미 손실로 계상된 부실대출금의 가치를 회생(loan workout)시켜야 한다.[29]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금 회수노력 강화는 또한 다른 차입자들의 의도적인 채무불이행 유인을 줄임으로써 대출금의 추가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 부실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자산 매각시 동시 매각에 의해 자산가격의 급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실채권정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전담기구를 개별 금융기관내에 각각 설치하는 분권적인 방법과 관련 금융기관들이 하나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중앙집권적인 방법이 있다. 또한 담보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여 미래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대출금의 현재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중 · 동구 주요국들은 우선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제전환 초기부터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에 착수하였다. 그 후 운영구조조정의 한 축인 내부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28)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국가의 지원방법으로는 ① 중앙은행의 장기유동성 공급 혹은 지준율 인하, ② 금리규제를 통한 예대금리차 확대 등이 있으나, ①은 인플레압력을 가중시키는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②는 대출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대출이 집중되는 역선택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arcia (1997)를 참조하기 바란다.

29) 부실채권의 가치회생에 대해서는 이미 제2장의 마지막 절에서 상당부분 언급하였는바, 이번 장에서는 재무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 중의 하나로 언급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간략하게 설명한다.

강화하고 은행감독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중 · 동구 주요국의 각 정부는 금융기관의 성공적인 운영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은행민영화를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중 · 동구 주요국의 은행민영화는 선진 외국은행을 민영화에 참여시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현황을 살펴보는 데 있어 운영구조조정과 제도구조조정을 분리하여 분석할 수 없다. 결국 중 · 동구 주요국의 제도 · 운영구조조정 현황을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제도적 기반 구축, 건전성 규제 강화, 은행감독체계 강화, 은행민영화 등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장의 2절에서는 먼저 중 ·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제도 · 운영구조조정 현황을 정리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금융구조조정에 있어 실질적인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재무구조조정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 정리한다.

2. 중 ·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제도 · 운영구조조정 현황

가. 제도적 기반 구축

중 · 동구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 새로운 중앙은행법과 은행법의 제 · 개정을 통해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효율적인 은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중앙은행법 및 은행법을 개정하거나 이들 법률 혹은 금융구조조정법 등 관련법률을 새로 제정해야만 했다(〈표 3-1〉 참조).

중 · 동구 주요국이 체제전환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작업은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거래를 수행하던 기존의 단일은행제도를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원적 은행제도란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여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각각 고유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함과 동시에 중앙은행에 적절한 기능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체제전환국에서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목표로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 은행감독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수립 ·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수단을 보유하는 등 대체로 독립성을 확보하였다.[30] 또한 중앙은행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을 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중 · 동구 주요국들은 은행법 및 중앙은행법 등 관련법률의 제 · 개정을 통해 이원적 은행제도의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1990년까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상업은행 분리 작업을 완료하였다. 〈표 3-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폴란드와 舊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이 체제전환 직후인 1989년과 1990년에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한 반면, 헝가리는 체제전환 이전인 1987년에 同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체제전환 당시 이들 3국의 금융시스템 상황 내지는 초기여건이 상이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헝가리는 구체제시절부터 경제개혁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원적 은행제도의 구축시점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또 한가지의 사실

30) 중 · 동구 주요국들은 체제전환 초기 이원적 은행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새로 설립된 중앙은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도의 독립성을 부여했다. 이는 이들 국가가 대개 서구의 중앙은행법, 특히 독일 중앙은행인 Bundesbank의 법을 원용하여 자국의 중앙은행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각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 · 발효시켰는바, 1996년 12월 헝가리가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였고, 1997년 중반 폴란드는 중앙은행 독립의 원칙을 담고 있는 新헌법과 新중앙은행법을 채택하였다.

〈표 3-1〉 중 · 동구 주요국의 제도적 기반 구축

시 기	내 용
1987. 1	- 헝가리 은행법 개정(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1989. 1	- 폴란드 은행법 개정(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1990. 1	- 체크 新중앙은행법과 일반은행법 제정 · 발효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1990. 10	- 헝가리 新은행법 제정
1991. 9	- 헝가리 파산법 채택 - 폴란드 新은행법 제정
1991. 10	- 체크 파산법 채택
1991. 12	- 헝가리 중앙은행법 및 은행법 再개정
1992. 2	- 체크 중앙은행법 및 은행법 개정
1992. 12	- 폴란드 은행법 개정
1993. 1	- 헝가리 BIS 적정자본기준 적용
1993. 2	- 폴란드 금융구조조정법 채택
1993. 4	- 체크 파산법 개정
1993. 5	- 폴란드 BIS 적정자본기준 적용
1993. 9	- 헝가리 파산법 개정
1995. 1	- 체크 부실채권 충당금 규정 채택
1996. 1	- 체크 BIS 적정자본기준 적용
1996. 12	- 헝가리 중앙은행법 개정 및 금융감독법 채택
1997. 1	- 헝가리 新은행법 제정
1997. 7	- 폴란드 중앙은행법 개정
1998. 1	- 폴란드 은행법 및 파산법 개정 - 체크 파산법 2차 개정
1998. 9	- 체크 은행법 2차 개정
2000. 5	- 체크 新파산법 채택

자료: EBRD(2000) 및 각국 중앙은행 자료 등으로부터 필자가 정리.

은 중 · 동구 주요국에서는 근대적 금융제도가 민영화 등의 여타 경제개혁에 앞서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즉, 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 · 동구 주요국들이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일련의 작업들은 대체로 1997~98년에 마무리되었다.

한편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한 방식도 국별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는 중앙은행의 9개 지점을 그 지역의 중심적 상업은행으로 개편한 반면, 헝가리는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면서 3개의 상업은행을 별도로 설립했다.[31)]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쟁적인 금융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시장에 의해 금리와 대출, 저축 등이 결정되는 금융체제의 재편은 국내저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이다. 중 · 동구의 체제전환국들은 이원적 은행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은행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내외 은행의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하였다. 이러한 설립절차의 간소화는 국유은행의 민영화와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 체제전환 초기 많은 민간은행들이 신설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듯 체제전환 이후 상당기간 중 · 동구 주요국에서는 은행 등 금융부문의 관련법률 및 규정의 제정(enactment)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체제전환 이후 만들어진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과 같이 기존 법률을 보다 세련되게 다듬고 손질하는 데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나. 건전성 규제 강화

중 · 동구 주요국들은 EU 가입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 이후 여신의 질(quality)이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간 느슨했던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은행부

31)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하면서 설립된 3개 은행은 Budapest Bank (BB), Commercial and Credit Bank(K&H), Hungarian Credit Bank(MHB) 등이다.

문의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신의 부실화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어야 한다.

중 · 동구 주요국은 G-10의 규범과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은행부문의 부실채권을 3~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중 · 동구 감독당국은 각 건전성 분류여신에 대해 최소한의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전여신에 대해서는 낮은 적립비율을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여신건전성 분류와 관련하여, 폴란드는 1개월 이상 연체되는 여신을 "고정(substandard)"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헝가리 및 체크의 경우 "요주의(watch)"로 분류하는 여신을 "고정"에 포함시키는 등 매우 엄격한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은행권의 부실자산(irregular assets)의 비중 및 대손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32] 물론 이러한 결과는 최근 신규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1993년 이후 장기간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이다. 2000년 말 기준으로 상업은행들은 부실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자본적정성 또한 양호하여 은행권의 BIS기준 新자기자본비율이 약 12.9% 수준이고 상업은행의 70% 정도가 12%를 상회하고 있다.[33] 이렇듯 폴란드 은행부문의 자산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이는 1993~94년 중 실시된 은행 및 기업의 구조조정작업과 감독당국의 효율적인 건전성체계 확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헝가리의 은행부문 건전성은 중 · 동구 국가 중 가장 좋은 편이다. 1997년 17.5%에 달하던 BIS기준 新자기자본비율이 최근 중견은행들의 위험자

32) NBP(2001)는 1993년 30.1%이던 폴란드의 부실여신 비율이 2000년 말 현재 14.7%로 낮아졌으며, 1993년 16.7%이던 貸損率이 2000년 말에는 5.4%로 낮아졌다고 평가하였다.

33) NBP(2001), p. 37 참조.

〈Box 3〉 BIS의 자기자본비율과 新자기자본비율

□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은 「BIS기준」이라는 「자기자본비율규제안」을 발표하였는데,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것임.

-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 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이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8%의 자기자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금융시장의 급변으로 인해 은행보유 자산의 시장위험이 점점 커지자 BIS는 시장위험도 자기자본비율의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하에 은행의 신용위험뿐 아니라 시장위험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함.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다양한 경영리스크 가운데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으나 금리,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 대하여 그 적용을 권고함.

- BIS기준 新자기자본비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은행 보유자산을 시장리스크 대상과 신용리스크 대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별도의 기준에 의해 필요자기자본규모를 산정토록 함.

- 둘째, 시장리스크에 대하여도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함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단기 後順位債를 자기자본으로 추가 인정함.

산 증가로 하락, 1999년 말 현재 14.2%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아직 중 · 동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1997년 자산수익률(ROA)은 1.3%,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4.6%를 기록하였으나, 경쟁격화로 인한 예대마진의 급격한 축소, 상대적으로 낮은 각종 수수료, 높은 간접비용 등으로 1998년에는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1998년 -2.2%와 -24.7%를 기록하

였던 헝가리 은행시스템의 ROA와 ROE는 1999년에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0.7%와 8.0%에 머물렀다.[34] 1999년 말 현재 無수익여신은 전체여신의 3%에 불과한데, 이 중 대부분이 "요주의(watch)" 여신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3-2〉 중·동구 주요국의 부실여신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구 분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부실여신 분류기준[1]	폴란드	-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헝가리	국제기준	국제기준	국제기준	국제기준
	체크 공화국	1~3	3~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
대손충당금 설정기준[2] (%)	폴란드	-	20	50	100
	헝가리	0~10	11~30	31~70	71~100
	체크 공화국	5	20	50	100

주: 1) 원금 및 이자를 연체시키고 있는 기간
2) 여신의 장부가액 대비
자료: OECD(1998, 1999)/한국은행(1999), 한정철(1999)에서 재인용.

체크의 경우, 부실여신으로 인해 많은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신용위험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 5월의 외환위기 및 금리 상승이 은행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체크 은행들의 시장위험 관리가 양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체크는 2000년 말 현재 부실여신의 비율이 19.5%로, 대부분이 장기여신이지만 회계 및 세무상의 규제와 파산절차 및 담보물 처분에 대한 법적 제약 때문에 2000년 5월 新파산법이 채택되기 이전까지 상각처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다.

34) NBH(2001b), p. 22.

다. 은행감독체계 강화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는 한 나라의 은행부문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첫째 감독기관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며, 둘째 은행에 대하여 엄격한 허가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35] 셋째 은행활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신에 대한 건전성 규정을 두며, 넷째 은행의 경영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국제기준의 회계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36] 이하에서는 중 · 동구 주요국의 은행감독체제에 있어 이와 같은 기준이 어느 정도나 적용되고 있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이들 국가가 어떠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1) 헝가리

IMF(1998)는 헝가리를 바젤위원회의 기준을 가장 잘 준수하고 있는 중 · 동구 체제전환국가로 꼽고 있다. 그 이유는 헝가리가 1997년 1월 겸업은행 체제로의 전환과 통합감독기관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新은행법을 발효[37]시킴으로써 은행 및 여타 금융기관을 모두 감독하는 하나의 금융감독기관을 설립,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헝가리는 체제전환국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의 파산법은 1992년에 제정되었으나, 너무 엄격해 오히려 기업부도를 촉진시킨다[38]는 비난에 따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同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

35) 주주자격, 적정자본금 규정 등 철저히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6)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1997) 참조.

37) 新은행법의 발효로 1998년 1월부터 외국은행의 자회사를 비롯한 지점의 설치가 허용되었고 1999년에는 은행부문도 중개 및 투자은행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38) 헝가리의 경우 1992년의 파산법 발효로 기업부도시 지체없이 소송을 통해 부

아시아 및 러시아 금융위기 이후 헝가리는 은행부문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감독당국은 은행들로 하여금 보유자산에 대해 국가위험도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토록 하였다. 이는 러시아 금융위기를 전후로 은행부문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외화자산은 물론 유가증권의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6월 말 30%이던 외화자산의 비중이 1998년 말에는 36%로 증가하였으며, 유가증권의 비중 역시 11%에서 1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말 현재 외화자산비율은 38%이며, 유가증권의 비중은 15.6%에 달하고 있다.[39] 외국계 은행의 증권중개사업 손실과 자산규모 2위의 소매은행(retail bank) 파산으로 통화당국은 1998년 말 긴급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헝가리의 은행감독체계를 보완하여 同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폴란드

폴란드의 은행감독체제는 비교적 견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8년 1월 新은행법의 시행으로 同 체계가 더욱 보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簿外去來(off-balance-sheet positions)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감독당국은 파생상품 거래 한도를 자본금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건전성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부외거래에 관계하는 거래상대방의 위험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solvency requirements)을 확대하였다. 폴란드의 은행부문은 2000년 기준으로 유가증권이 전체 은행자산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위험에 대한 적정자기자본요건을 1999년부터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겸업은행체제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도기업을 처분하거나 파산시킬 수 있는 automatic trigger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同 법 시행 이후 부도기업 수가 급증, 오히려 기업부도를 촉진시킨다는 비난이 일자, 헝가리 정부는 경제에의 충격을 가라앉히기 위해 1993년 중반 同 제도를 폐지하였다(한정철, 1998).

39) NBH(2001a), p. 101.

하고, 폴란드의 경우 금융부문에 대한 감독체제는 통합체제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체크 공화국

1997년 5월의 외환위기는 체크 정부와 통화당국으로 하여금 은행시스템의 문제가 同 위기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은행 및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의 개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체제전환 초기에 성행했던 여러 형태의 부정행위와 내부자거래를 가능케 했던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체크는 1998년 9월 발효된 제2차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非금융기관 출자한도를 설정하고, 은행 내의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업무간의 차단벽(Chinese walls)을 설치하였으며, 은행의 자기 또는 고객 명의의 증권거래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1998년 1월에는 파산법을 개정하여 지급불능(insolvency)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은행의 파산신청과 판사의 결정 및 회사정리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채권자인 은행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1998년 이후 러시아 경제위기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체크 은행시스템의 취약성이 더욱 표면화됨에 따라 체크의 통화당국은 금융감독을 더욱 강화하였다. 1998년 이후 은행부문의 유동성 선호로 실질기준으로 여신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이 빚어졌고, 영업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건전성이 오히려 개선되었다. 기업의 영업환경 악화로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무수익여신[40]의 비율이 2000년 말 현재 19.5%로 아직 높게 나타나고

40) 무수익여신은 부실여신에 고정으로 분류된 여신을 합한 여신으로서, 금융기관이 부실여신 및 무수익여신을 과다하게 보유할 경우 대출금의 장기 고정화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금융기관의 수지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금융자금 배분을 왜곡시켜 안정적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있으나, 1996년 말 9.2%이던 은행부문의 위험가중평균 자기자본비율이 2000년 말에는 13.7%로 크게 개선되었다.[41]

前述한 바와 같이, 1998년의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의 허가와 감독요건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는 은행부문의 회계기준을 EU 지침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라. 은행민영화

중 · 동구 舊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내자본이 부족한 상황이고 구체제시절 이래 국가가 은행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지역에서의 소유권 이전 문제는 주로 외국인에 의한 지분인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 · 동구 국가들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volatility)이 크고 은행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국내에서 문제은행을 인수할만한 대규모 우량은행을 물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당국 정부는 문제은행의 인수자로 외국인을 최선의 투자자로 고려하게 된다.

물론 외국인의 시장진입이 경쟁을 심화시켜 일부 투자유치국 은행이 도산되는 경우[42]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 · 동구 국가들에서와 같이 구체제시절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부와 국유은행, 그리고 국유기업간의 연결고리에서 기인한 연고여신(connected loan)이 금융개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유치가 은행개혁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즉, 외국은행은 연고여신을 취급할 가능성이 적고 경쟁의 심화와 새로운 금융기법 및 기술의 전수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중 · 동구 국가들은 시장규모가 협소해 자국의 은행시스템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상황이다. 게다가

41) IMF(2001), p. 25.

42) 이는 외국은행이 초기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중·동구 국가들이 가입했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OECD나 EU 등에서도 외국인의 자유로운 진입허용을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1) 헝가리

헝가리의 은행부문은 2000년 말 현재 기업에 대한 은행여신이 GDP의 20.6%에 불과하고 체크에 비해서도 실질적으로 同 부문의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과 은행 및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정책 등에 힘입어 체크에 비해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헝가리의 은행부문 구조조정 작업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F(1998)에 따르면, 1992~96년중 이에 소요된 비용은 GDP의 약 10%에 이르며, 헝가리 정부는 이후의 민영화 수입을 통해 同 비용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였다.

은행부문의 정부보유 지분 매각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7대 은행의 대주주가 아니다. 7대 은행의 민영화는 대부분 외국금융기관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이루어졌는바,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등이 7대 은행 중 5개 은행의 전략적 다수지분(대주주)을 보유하고 있다. 7대 은행 중 나머지 2개 은행은 헝가리 최대은행인 국가저축은행(National Saving Bank; OTP)과 가장 부실한 Postabank인데, OTP는 정부가 최소한의 비토지분만을 보유하고 공모방식(public offerings)을 통해 전격 민영화되었으며, Postabank는 아직 국유상태이다. 수신고 측면에서 헝가리 2대 은행인 Postabank는 지속적으로 자본금을 증액(recapitalization)시켜 이제는 국가가 이 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1979년 헝가리에 최초의 외국은행이 설립된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헝가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헝가리에 외국은행의 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헝가리 정부의 은행민영화가 추진되면서부터였다. 헝가리의 은행들은

대부분 1990년대 하반기에 민영화가 완료되었는데, 1995~2000년 동안 총 10개의 은행이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다. 이러한 은행의 민영화와 외국은행의 헝가리 은행시스템 진출 결과, 2000년 말 현재 헝가리 은행시스템 전체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지분은 21.3%이며,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66.6%에 달한다. 또한 총자산 규모로 1990년에 81%에 달했던 국유은행의 비중은 2000년에는 9% 이하로 축소되었으며, 1990년 10%에 불과하였던 외국은행의 비중은 2000년에 62%까지 증가하였다.

2) 폴란드

폴란드는 OECD 가입 당시의 유예사항을 해결하고 EU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1998년 1월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부문의 외국은행 진입 제한을 철폐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말 기준으로 외국은행[43]들은 폴란드 은행부문 총납입자본금(share capital)의 54%를 차지하게 되었다.[44]

체제전환 초기에만 해도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권 등 폴란드의 은행시스템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부문의 민영화와 외국자본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3~97년 중 5개 지방은행과 4대 특수은행 중 하나인 Bank Handlowy(대외무역은행)[45]의 민영화를

43) 민영화된 은행의 지분(equity stakes)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점(subsidiaries)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을 의미함.

44) NBP(2001), p. 23.

45) 1997년 중반 폴란드 정부는 Bank Handlowy의 지분 28%를 장부가격보다 약 25% 정도 높은 약 10억 달러에 전략적인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성공적으로 매각하였다. 이를 인수한 컨소시엄에는 J. P. Morgan, SwedBank, Zurich Insurance Company 등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同 은행의 전체 지분 중 37%는 바르샤바 증권거래소에서 일반 및 기관투자가들에게 매각되었다. 그리고 전체 지분 중 5%는 은행종업원들에게 분배되었고, 나머지는 국가 30%를 사회보장개혁 비용을 충당키 위한 준비금 목적으로 전환사채(무의결권) 형태로 보유하였다(World Bank, 1997).

실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46]

〈표 3-3〉 중 · 동구 주요국의 국유은행 자산비중과 은행부문 소유구조

구 분		폴란드	헝가리	체크 공화국
은행 수 (외국은행 수)(개)	1993	87(10)	40(15)	45(12)
	2000	74(47)	38(30)	40(16)
국유은행의 자산비중(%)[1]	1993	80.0	74.9	78.0
	2000	24.0	8.6	28.2
소유주체별 자산비중[1)2)] (%)	국 가	24	9	28
	민 간	76	91	72
	외국인	70	62	66

주: 1) 각국의 전체 은행자산 대비.
2) 2000년 말 기준.
자료: BIS(2001)/*Banker*(1999)/IMF(1999)/EBRD(2001)/각국 중앙은행 자료

최근의 대형은행 매각사례는 다음과 같다.[47] 1998년 10월 BPH(Bank Przemyslovo Handlowy)의 지분 37%가 6억 달러에 Bayerische Hypo와 Vereinsbank AG에 매각되었다. 1999년 6월에는 2개 국가저축은행 중 자산규모가 큰 PEKAO의 지분 52.1%가 11억 달러에 Unicredito Italiano와 Allianz에 매각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Bank Zachodni의 지분 80%가 5억 8,100만 달러에 Allied Irish에 매각되었다. 2000년 들어서도 대형은행의 매각은 계속되었는데, 먼저 Citibank의 해외투자법인이 Bank Handlowy의 외국인투자자, 폴란드 국고부, 기관투자자 등 기존의 주주들로부터 87.8%의 지분을 매입하였다. 또한 Deutsche Bank 폴란드 법인은 BWR SA(Bank Wspolpracy Regionalnej SA)의 지분을 직 · 간접적으로 매입하여 同 은행

46) 이의 결과, 國有은행의 은행부문 자산점유율이 1993년 말 86.1%에서 1997년 말에는 52.4%로 하락했다(IMF, 1998).

47) Balcerowicz and Bratkowski(2001), pp. 26~29.

총지분의 91.7%를 확보하였다. 이밖에 1999년에 PBK SA(Powszechny Bank Kredytowy SA)의 지분 43.5%를 인수한 바 있는 Bank Austria AG가 同 은행 지분의 10.29%를 추가로 인수하여 총지분을 53.7%로 확대하였다.

3) 체크

체크의 경우, 2000년 말 현재 3대 대형은행의 시장점유율(자산규모)이 여전히 70%에 이르고 있다. 자산규모 順으로 舊대외무역은행인 CSOB (Ceskoslovenska obchodni banka), Ceska Sporitelna, Komercni banka (Commercial Bank) 등이 바로 체크의 3대 은행들이다. 그러나 17개에 이르는 외국인소유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branch)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이들 외국계 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이 66%를 넘어섰는데, 이는 최근 이들 3대 은행의 민영화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48)]

이처럼 최근 체크 정부가 3대 은행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은행시스템의 취약성(fragility)을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1999년까지의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이제 막 회복기에 접어든 체크 경제가 다시 한번 은행위기를 경험하면 장기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최근 은행민영화를 서두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체크가 그동안 헝가리와 폴란드에 비해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데에는 은행민영화가 계속 지연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1998년 3월, 당시 자산규모 3위 IPB의 지분 36%가 일본의 투자은행인 Nomura Securities에 매각된 이후 주춤하던 주요 은행의 민영화가 前述한 바와 같이 2001년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체크의 자산규모 3위 Komercni banka가 금년 여름에 프랑스의 Societe Generale에 매각되었다.

48) BIS(2001), p. 25.

上記 은행은 민영화되기 이전인 작년부터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3,000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부실여신 회수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 상반기부터 다시 이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10,000명의 고용자들 가운데 앞으로 3년간 3,000~4,000명의 추가적인 인원감축이 단행될 예정이다. Societe Generale에 따르면, 上記 은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최근 은행간 통합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 체크의 최대 은행으로 부상한 CSOB는 벨기에의 KBC Bank에 매각되었다. 최근 부실여신 처리와 소매금융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 상반기동안 소매금융부문의 예금이 7% 증가하였다. 현재 13,000명의 종업원 가운데 곧 1,100명의 인원감축이 있을 예정이며, 2002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1,200명의 인원감축이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 계획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체크內 자산규모 2위 Ceska sporitelna가 오스트리아의 Erste Group에 인수되었다. 민영화 이후 同 은행은 수익구조 개선, 특히 소매금융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2,000명의 인원감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13,000명의 종업원 가운데 3,000명의 인원감축이 2002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同 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인구 천만 명의 체크內에서 4백만 명의 고객을 확보, CSOB를 제치고 최대의 소매금융은행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중 ·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재무구조조정 현황

금융부문의 재무구조조정은 크게 정부지원에 의한 구조조정과 중앙은행의 지원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조정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공채를 발행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 · 동구 주요국의 재무구조조정에서 일반적으로

〈표 3-4〉 중 · 동구 주요국의 재무구조조정 사례

재무구조조정 방안	국가 및 시기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조정	
1. 자본수혈	
가. 채권발행을 통한 지원	
1) 부실여신과 교환	체크(1991~92); 헝가리(1992~93)
2) 반대급부 없는 일방적인 지원	체크(1991~92); 헝가리(1993~94); 폴란드(1991, 1993~94)
나. 현금 이전	체크(1991~92, 1993~96)
다. 자산 이전	사례 없음
2. 은행채무의 축소	
가. 은행의 對정부 채무 탕감	사례 없음
나. 은행채무 인수	사례 없음
3. 환매협약	체크(1993, 1996~97)
4. 미수금에 대한 정부보증	체크(1991, 1993, 1996); 헝가리(1991)
5. 기업채무상환에 개입	
가. 기업부채 인수	사례 없음
나. 기업부채의 정부보유 주식으로의 전환	헝가리(1992)
다. 기업의 對정부 채무의 리스케쥴링 혹은 탕감	헝가리(1992)
중앙은행의 지원에 의한 재무구조조정	
- 유동성 지원	체크(1996); 폴란드(1993)
- 자산관리기구에 대한 여신 제공	체크(1990년대 초반, 1997)
- 채권발행을 통한 자산관리기구의 자본금 출연	사례 없음
- 은행에 장기여신 제공	사례 없음
- 對은행여신의 리스케쥴링	폴란드(1993)
- 은행의 손실충당을 위한 중앙은행의 지분 탕감	사례 없음

자료: Tang, Zoli and Klytchnikova(2000).

는 무수익여신(NPL)과 채권이 교환되었으나,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채권을 지원한 사례도 많았다. 이밖에도 은행의 순가치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현금 혹은 자산을 이전시켜주는 방법, 은행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법, 환매협약에 의한 지

원방법, 그리고 미수금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법들이 이따금씩 사용되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정부가 기업의 채무상환에 개입하는 방법도 사용되었다.

중앙은행의 지원에 의한 금융부문의 재무구조조정은 본 장 1절에서 前述한 바 있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한 금융기관의 손익구조개선방식과 유사한 경우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방안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이 직접 문제은행에 단기 및 장기여신을 제공하거나, 문제은행의 자산을 보충해주는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표 3-5〉 중 · 동구 주요국의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조정 비용 추이

(단위: GDP 대비 %)

	1991	1993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계[1]
체크									
채권발행	4.0	0.0	0.0	0.0	0.0	0.0	0.0	0.0	3.4
현금이전	0.0	0.0	0.9	0.7	0.3	0.0	n.a.	n.a.	1.5
부실여신구입	10.9	1.8	2.7	0.3	0.0	0.1	0.7	1.0	15.7
합계	14.9	1.8	3.6	1.0	0.3	0.1	0.7	1.0	20.6
헝가리									
채권발행	0.0	2.7	3.6	2.1	0.1	0.1	0.0	1.6	12.4
미수금 정부보증	0.0	0.1	0.0	0.0	0.1	0.0	0.1	0.0	0.5
합계	0.0	2.8	3.6	2.1	0.2	0.1	0.1	1.6	12.9
폴란드									
채권발행	7.1	0.0	1.3	0.8	0.0	0.0	0.0	0.0	8.2

주: 1) 총계는 1991～98년 동안 연간 비용을 각각 항목에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1998년 말 기준 純현재가치(NPV)로 환산한 것임.

자료: Tang, Zoli and Klytchnikova(2000).

가.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조정

헝가리, 폴란드, 체크 등 중 · 동구 주요국의 가장 보편적인 금융구조조정 방안은 정부의 지원하에 문제의 은행에 새로운 자본을 수혈한 뒤, 민영화하는 것이었다. 각국 정부는 대부분 정부채권으로 은행의 자본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였다. 헝가리에서는 무수익여신 장부가의 13%에서 100%에 이르는 다양한 가격으로 정부채권이 무수익여신과 교환되었으며, 반면에 폴란드에서는 74～90% 범위내에서 교환되었다.

중 · 동구 주요국의 재무구조조정 사례에서 정부지원에 의한 재무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인들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재무구조조정은 운영구조조정과 제도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헝가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992～93년 동안 추진된 부실여신통합프로그램의 추진과 함께 은행의 운영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부실여신 문제가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49] 그러나 1993년부터 추진된 은행통합프로그램은 운영구조조정과 제도구조조정이 뒷받침되어 헝가리 은행시스템내 부실여신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하였다. 한편 체크의 경우는 제도 · 운영구조조정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재무구조조정만이 반복되어 엄청난 재정비용을 지불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기업의 구조조정이 은행의 재무구조조정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실패사례는 역시 체크가 제공하고 있고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폴란드의 금융구조조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기업 · 은행구조조정프로그램(Enterprise and Bank Restructuring Program; EBRP)이 바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은행의 재무구조조정을 하

49) Bonin and Schaffer(1995).

나의 프로그램에 의해 동시에 추진한 예이다.[50]

셋째, 문제의 은행에 대한 구제조치가 반복되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크와 헝가리의 경우에 구제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였으며, 이는 곧 은행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 1987년에 은행에 대한 구제조치가 처음 이루어진 이후 1992년까지 계속 은행구제가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조건을 협상하는데 부실여신이 많을수록 은행의 협상력이 커진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사고가 만연하였다.

넷째, 재무구조조정에 있어 부실여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즉, 문제의 부실여신이 구체제 이전으로부터 유래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것이 지에 대한 확실한 구분과 이러한 구분에 따른 차별화된 처리방안이 재무구조조정에 매우 유효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2년 동안 추진된 헝가리의 채무채권화에는 시장경제체제의 은행시스템이 설립된 이후의 부실여신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그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다.

나. 중앙은행의 지원에 의한 재무구조조정

前述한 바와 같이 은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은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51] 중앙은행은 단지 유동성공급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은행들이 지급불능사태나 유동성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은행위기에 직

50) 재무구조조정이 기업구조조정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Gray and Holle(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51) Daniel(1997).

면해 있을 때, 중앙은행이 이를 지켜만 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듯 하다. 제2장에서 살펴본 금융위기를 경험한 12개국 가운데 8개국이 은행부문 재무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한 바 있으며, 이 중 3개 국가[52]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중앙은행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중 · 동구 주요국들은 금융부문의 재무구조조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이 비교적 억제되었다. 헝가리의 경우 중앙은행이 재무구조조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폴란드는 몇몇 소규모 민영은행의 구조조정 및 청산에 개입한 예가 있으나 그 비용은 GDP의 0.5%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다.[53] 다만 체크는 중앙은행이 금융부문의 재무구조조정 작업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용도 GDP의 4.8%에 달했다.[54] 이처럼 개입 정도는 불가리아와 키르기즈스탄에 비해 심하지는 않지만 금융부문 재무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개입한 중 · 동구 주요국의 사례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금융부문의 재무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재정부담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체크의 경우 1995년 말에 착수된 통합프로그램Ⅱ(Consolidation Program 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은행이 부담하였다. 同 프로그램은 체제전환 초기에 설립된 중소규모의 은행들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同 프로그램 추진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체크 정부는 결국 GDP 대비 1.2% 정도에 달하는 규모의 정부보증을 중앙은행에 제공해야만 하였다. 또한 1990년 초 체크의 중앙은행은 부실여신

52) 불가리아는 1991~98년 동안 중앙은행이 은행구조조정에 지원한 규모가 GDP 대비 11.8%에 달했으며, 키르기즈스탄은 同 8.9%, 체크는 同 4.8%에 달했다.

53) Kawalec(1999), p. 25.

54) Tang, Zoli and Klytchnikova(2000), p. 28.

처리 전담기구인 KOB에 대한 신용공여를 확대하였는데, KOB의 채무 또한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그대로 재정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둘째, 금융구조조정을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체크의 경우 정부재정, 자산관리회사, 민영화청, 중앙은행 등으로부터의 재원마련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은행부문의 부실을 치유하기 위한 잠재적인 재정위험과 실제 비용을 정확하게 개념화하기란 매우 어렵다.

셋째, 은행부문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은 심각한 인플레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점분석대상인 중 · 동구 주요 3개국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나, 인근의 불가리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가리아는 중앙은행이 1995~97년 동안 문제의 은행들에게 신용공여를 확대해주었으나, 이는 곧 1997년 불가리아가 超인플레를 경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55]

마지막으로 넷째, 중앙은행의 개입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할 수 있다. 前述한 바 있는 체크의 통합프로그램Ⅱ에서 중앙은행의 자회사 격인 Ceska Financni가 문제의 은행들로부터 무수익여신을 협상가격으로 인수하는 것은 물론 문제의 은행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투자에도 관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체크의 중앙은행은 객관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대상중의 하나인 특정은행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55) Tang, Zoli and Klytchnikova(2000), p. 28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중앙은행이 문제의 은행들에게 지원한 신용규모는 1995년 GDP 대비 2.8%, 1996년 同 6.6%, 1997년 同 2.3%에 달했다.

제4장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성과분석

부실금융기관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고금리 경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신용경색과 자원배분의 왜곡 등을 해소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즉,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부실금융기관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건전성이 제고되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혼란이 수습되고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경제회복기반의 조성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배구조 개선, 기업평가능력의 향상 및 선진금융기법 도입 등 금융기관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시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 개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우선 중 · 동구 주요국들이 금융구조조정에 의해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 제도를 얼마만큼 선진화하였으며, 금융제도의 포괄성과 효율성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까지 향상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성과를 살펴본 다음, 금융중개기능의 향상,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금융부문에 대한 신뢰도 회복 등 금융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지

표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중 · 동구 주요국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제도적 측면의 금융구조조정 성과

가. 금융관련 제도의 선진화

중 · 동구 주요국의 은행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여건은 체제전환 초기에는 매우 열악하였다. 엄격하지 못한 은행허가제도 및 건전성규정은 체제전환 초기 중 · 동구 주요국 은행시스템에 많은 새로운 은행들의 진입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력이 부족하고 건전성이 떨어지는 부실 은행들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심각한 은행위기를 경험함으로써 중 · 동구 주요국들은 은행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건전성규제를 도입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자국내 은행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표 4-1〉 은행시스템 관련 제도의 선진화 추이

	은행위기 기간	건전성규제 도입시기 (규제강화 시기)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8%) 적용시기	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
체 크	1991~93 1996~97	1995(1998)	1996	n.a.
헝가리	1992 1995~96	1993(1996)	1992	1996
폴란드	1992~93	1993~94(1998)	1993	1994

자료: Tang, Zoli and Klytchnikova(2000), p. 14.

중 · 동구 국가들 가운데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시스템 관련 제도의 도입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국가는 헝가리이다. 헝가리는 1992년 은행위기를 경험하면서 BIS 자가자본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93년에 건전성규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1995~96년의 은행위기를 계기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건전성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폴란드는 1992~93년 은행위기 직후 상기 관련 제도를 모두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은 헝가리보다도 빠른 1994년에 처음 도입하였다. 중 · 동구 주요국 가운데 가장 관련 제도의 도입이 늦었던 체크도 1996년까지 대부분의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접어들 무렵 중 · 동구 주요국 모두가 자국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와 효과적인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완료하였으며, 여기에는 각국이 경험한 은행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금융시스템이 서구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금융제도의 포괄성과 효율성 향상

금융구조조정 이후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제도가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는 동구 26개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을 매년 모니터링하는 EBRD의 평가가 가장 유효할 것이다. EBRD의 평가에 따르면, 〈표 4-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 · 동구 주요국의 경우 금융제도 관련법률의 포괄성과 효율성은 서방 선진국과 비교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들어 금융제도의 효율성이 폴란드와 체크의 경우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체크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 채권자와 주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법정 투쟁을 통해 되찾으려는 시도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크의 경우에는 2000년에 다시 개

〈Box 4〉 동구 체제전환국 금융제도의 포괄성과 효율성에 대한 EBRD 평가

□ EBRD는 매년 Transition report를 통해 '포괄성(extensiveness)'과 '효율성(effectiveness)'을 기준으로 금융제도 관련법률을 평가한 자료를 제시함.

- 저당법(pledge law), 파산법, 회사법 등의 '포괄성'을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채 구조조정,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 등과 같은 상업거래에 이들 법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가를 서방 선진국들과 비교해 평가함.

- '효율성'은 이들 3개 법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 지를 평가함.

□ 또한 은행부문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들의 '포괄성'은 바젤위원회(Basle Committee)가 규정하고 있는 은행감독의 핵심원칙들이나 국제유가증권감독기구(IOSCO)의 유가증권 거래원칙 등과 같은 최소한의 국제기준들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 지를 의미함.

□ 이와 함께 '효율성'은 이들 법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 그리고 감독당국이 부실은행이나 부실기업, 그리고 관련법률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와 그 빈도 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고려됨.

- 결국 이를 통해 중 · 동구 분석대상국의 경우 은행 및 증권 활동에서의 신뢰 구축을 위해 금융제도 관련법률과 규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음.

선되긴 하였지만 금융제도의 포괄성도 1999년에는 1단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바, 同 법률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크는 은행 및 자본시장 관련법률에 있어서도 폴란드나 헝가리에 비해 포괄성과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체크가 공시요건 등 자본시장 관련법률의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 · 동구 주요국들은 EU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은행시스템 내부의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EU 지침에 의거하여 금융제도를 EU 기준에 근접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헝가리와 폴란드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EBRD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은행, 자본시장 및 보험 부문을 통합 감독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반해 체크는 다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체크 은행부문의 내부지배구조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체크 정부의 철

〈표 4-2〉 중 · 동구 주요국 금융제도 관련법률의 포괄성과 효율성

국 가	1997			1999			2000		
	포괄성	효율성	총평	포괄성	효율성	총평	포괄성	효율성	총평
폴란드	**4**	**4+**	**4**	**4**	**4**	**4**	**4**	**4**	**4**
헝가리	**4**	**4**	**4**	**4**	**4**	**4**	**4**	**4**	**4**
체크	**4**	**4**	**4**	**3+**	**2+**	**3**	**4**	**3-**	**3+**
불가리아	3	3	3	3	2+	3-	3	2+	3-
마케도니아	2	2	2	3	2	2+	3	2-	2+
에스토니아	4	4	4	4	3+	4-	4	3-	3+
라트비아	3+	3	3	3	2	3-	3	3	3
리투아니아	4	3	3	3-	2	3-	4	4-	4-
그루지아	3	2	2	1	1	1	3+	2	3-
카자흐스탄	2	2	2	3	3-	3-	3	3-	3
키르기즈스탄	3	2	2	3-	2	2+	3+	3-	3
우크라이나	2	2	2	2	2	2	3	2+	3-

주: 점수의 범위는 「1~4+」이며, 포괄성과 관련하여 '점수: 1'은 관련법률의 적용범위가 매우 적은 상태이며, '점수: 4+'는 同 법률의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그 기준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한편 효율성과 관련하여 '점수: 1'은 同 법률이 매우 애매하고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며, '점수: 4+'는 금융시장의 감독당국이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정규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자료: EBRD(1997, 1999, 2000).

저하지 못한 건전성 규제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체크는 파산법에 대한 개정이 너무 잦아 법의 유효성이 의문시되며, 아직까지도 체크의 파산절차가 너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 금융구조조정 성과지표 분석

가. 금융중개기능

금융구조조정의 1차적인 목표는 자국 금융시스템의 금융중개능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금융서비스 수준을 개선시키는 데 있다. 금융구조조정 이후 금융중개기능의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는 GDP 대비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과 GDP 대비 M2의 비율 등을 들 수 있다.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은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에 성공했을 경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예금자들이 금융시스템으로 되돌아오면 예금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M2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GDP 대비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의 지나친 상승세는 잘못된 대출관행의 지속을 암시할 수도 있으며, 同 비율의 급격한 하락은 신용경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 · 동구 주요국은 전반적으로 금융구조조정 이후 금융중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1〉과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에서 민간부문신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M2의 비중 모두 별다른 개선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중개능력은 아직 매우 미약하다.

GDP 대비 민간부문신용은 헝가리의 경우 1990년대 들어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뚜렷한 개선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림 4-1〉 중 · 동구 주요국의 민간부문의 신용비중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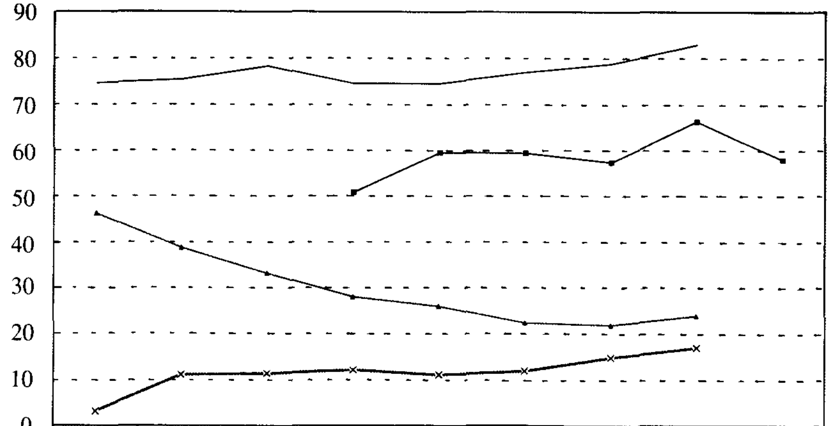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체크				50.8	59.5	59.4	57.4	66.4	58
헝가리	46.2	38.7	33.1	28.1	26.1	22.5	22	24	
폴란드	3.1	11.1	11.4	12.2	11.2	12	14.9	17.1	
OECD 평균	74.6	75.4	78.3	74.5	74.5	77	78.9	83	

자료: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World Bank(2001)/BIS(2001)/각국 중앙은행 통계.

폴란드는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수준이 중 · 동구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M2의 비중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헝가리와 폴란드는 모두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체크는 上記 2가지 지표상으로 중 · 동구 주요국 가운데 가장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금융중개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上記 2가지 지표의 추세는 전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체크의 금융중개기능은 1996~97년 은행위기의 여파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나.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효율성

금융구조조정 이후 은행부문의 건전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는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무수익여신의 비율과 자기자본비

〈그림 4-2〉 중·동구 주요국의 총통화 비중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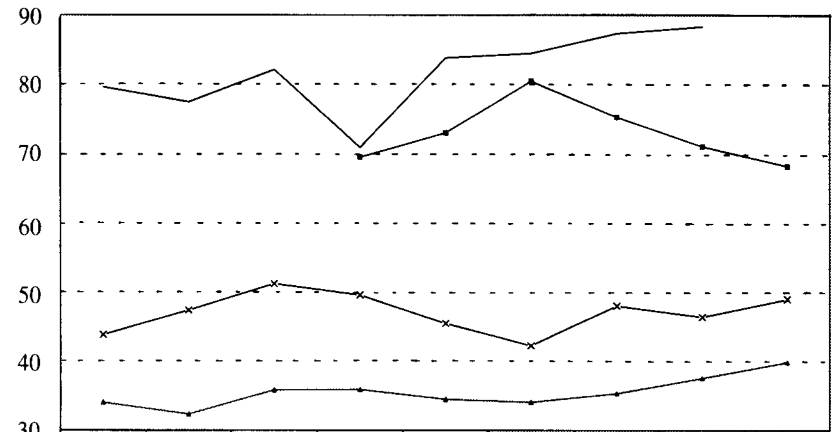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체크				69.6	73.1	80.5	75.4	71.2	68.3
헝가리	43.8	47.4	51.2	49.6	45.5	42.3	48.1	46.5	49.1
폴란드	34	32.3	35.8	35.9	34.5	34.1	35.4	37.6	39.9
OECD 평균	79.6	77.5	82.1	71	83.8	84.5	87.4	88.4	

자료: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World Bank(2001)/BIS(2001)/각국 중앙은행 통계.

율 등이 있다. 여기서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부문의 효율성 개선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예대금리차와 GDP 대비 은행부문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용비중 등을 들 수 있다. 은행계정의 기본적인 자금조달이 예금이며, 자금운용은 대출이므로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을 결정하는 원천이다. 그런데 금융시스템 내부의 경쟁이 심화되면 예대금리차는 줄어들고 결국 이로 인한 금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GDP 대비 은행부문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용비중은 은행의 중앙은행신용 의존도를 의미하는바, 은

행시스템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효율성이 증대될수록 중앙은행신용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

〈표 4-3〉 중 · 동구 주요국의 자기자본비율

(단위: 기말 기준,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체 크			10.2	9.8	9.5	12.0	13.6	17.2
헝가리			16.9	17.6	18.3	17.4	15.2	14.0
폴란드	16.5	20.8	18.5	17.5	16.9	15.0	13.1	12.8

자료: EBRD(2000)/World Bank(2001)/BIS(2001)/각국 중앙은행 통계.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무수익여신의 비율은 이미 〈표 2-1〉과 〈그림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 · 동구 주요국 모두 은행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보다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국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996년 은행위기가 1997년 통화위기로까지 심화되었던 체크는 아직도 同 비율이 19%를 초과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1990년대 중반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0년 말 현재 16%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미 〈표 3-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실여신의 분류기준을 여타 국가들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은행시스템이 상기 부실여신 비율보다는 훨씬 건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실채권 처리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헝가리는 同 비율이 1997년부터 5% 이하로 개선되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다.[56)]

자기자본비율은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 · 동구 주요국 모두 BIS 기준을 여유있게 충족시키고 있으며, 1999년까지 특히 헝가리의 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들어 체크의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BIS의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규제안을 도입하는

56) 대체로 선진국의 평균 부실여신비율은 총여신의 5% 이하이며, 신흥개도국들은 10~2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과정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단기 후순위채가 상당부분 자기자본으로 추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표 4-4〉 중 · 동구 주요국의 예대금리차 추이

(단위: 연율 기준,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체 크				7.0	6.0	5.8	5.8	5.5	4.7
헝가리	4.1	4.7	8.6	9.8	7.1	6.5	5.1	3.2	3.4
폴란드	462.5	1.1	1.3	1.3	-0.6	6.7	6.1	5.6	6.3
OECD 평균	5.2	5.4	5.4	4.7	4.2	4.4	4.3	4.2	

자료: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World Bank(2001)/BIS(2001)/각국 중앙은행 통계.

〈표 4-5〉 중 · 동구 주요국 은행부문의 중앙은행신용 비중

(단위: GDP 대비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체 크				7.8	6.6	5.4	5.4	6.0	4.1
헝가리	16.9	16.7	10.0	10.4	9.3	5.4			
폴란드	13.6	9.3	4.2	4.1	3.3	2.7	2.9	2.1	
OECD 평균	2.1	2.4	2.8	2.8	2.2	2.2	1.9	1.8	

자료: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World Bank(2001)/BIS(2001)/각국 중앙은행 통계.

중 · 동구 주요국의 예대금리차 추이를 살펴보면,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헝가리와 체크는 1993년 이후 예대금리차가 축소되어 은행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헝가리는 선진국 수준보다도 낮은 예대금리차를 보이고 있어 최근 선진외국은행의 헝가리 은행산업 대거 진입으로 은행산업내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은행부문의 중앙은행신용 의존도는 〈표 4-5〉에서 중 · 동구 주요국 모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금융구조조정 이후 이들 은행시스템의 효율성 증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다. 금융부문에 대한 신뢰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부문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며, 금융위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였는가는 바로 떨어진 금융부문에 대한 신뢰도를 얼마나 회복시켰는가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 정도는 총예금대비 현금비율과 M1/M2 비율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시장참여자들은 현금과 이에 준하는 요구불예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며,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현금선호도는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통해 금융구조조정 이후 금융부문에 대한 시장의 신뢰회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총예금대비 현금비율은 1995년 정점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은 확실하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도 매우 높은 현금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금선호도는 폴란드가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1995년까지 선진국 수준보다 양호한 총예금대비 현금비율을 나타내던 체크는 1994년 이후부터 同 비율이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그림 4-3〉 참조).

M1/M2 비율은 헝가리의 경우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가장 뚜렷한 감소추세를 시현하고 있고, 폴란드는 체제전환 초기에 큰 폭의 감소가 이루어진 뒤, 1996년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1997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또한 체크는 1996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M1/M2 비율만을 지표로 하면, 중·동구 주요국은 모두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同 비율은 3국이 모두 선진국 수준과 커다란 괴리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 선진국 수준에 수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3〉 중 · 동구 주요국의 총예금대비 현금비율

(단위: 기말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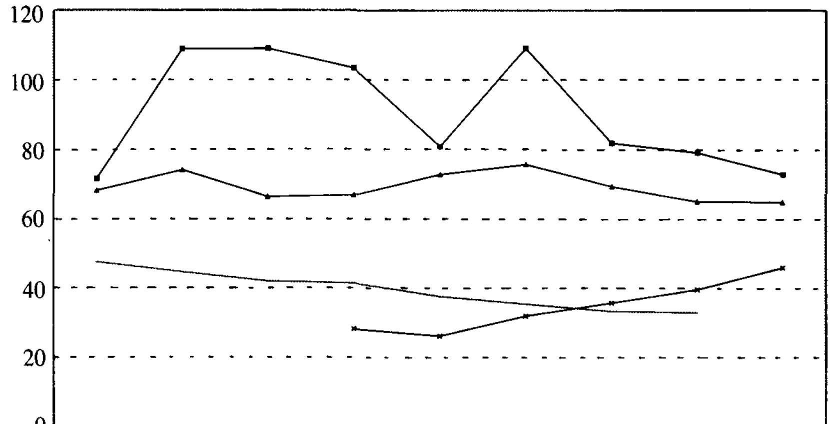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체크				28.1	26.1	31.9	35.7	39.6	45.9
헝가리	68.2	74.1	66.4	66.9	72.9	75.8	69.4	65.1	64.9
폴란드	71.6	108.8	108.9	103.3	80.9	109.1	81.9	79.2	72.9
OECD 평균	47.5	44.6	41.9	41.4	37.6	35.4	33.3	32.9	

자료: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World Bank(2001)/BIS(2001)/각국 중앙은행 통계.

3.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종합평가

지금까지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를 제도적 측면과 금융지표를 통한 평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3국 모두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회복 측면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금융부문의 건전성 개선에 있어서는 헝가리가 가장 좋은 성과를, 그리고 폴란드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린 반면, 체크는 아직도 부실여신 처리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한편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금융중개능력 향상은 3국 모두 아직까지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은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며, 이는 곧 이들의 대외신인

〈그림 4-4〉 중 · 동구 주요국의 M1/M2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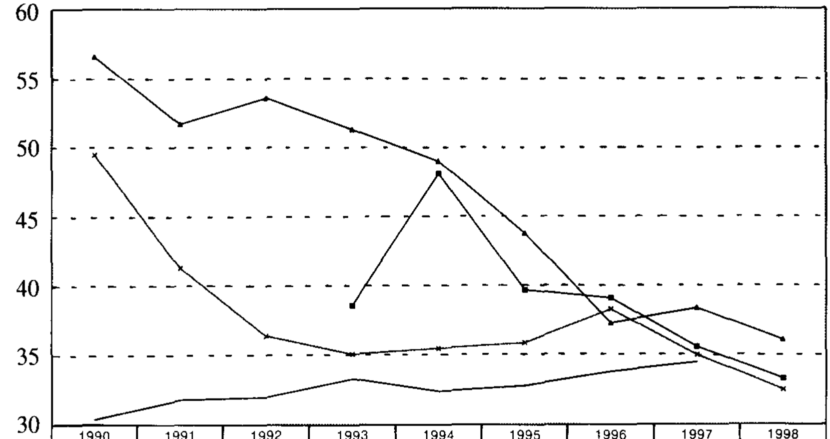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체크				38.6	48.1	39.7	39.1	35.6	33.3
헝가리	56.6	51.7	53.6	51.3	49	43.8	37.3	38.4	36.1
폴란드	49.5	41.3	36.4	35.1	35.5	35.9	38.3	35	32.5
OECD 평균	30.4	31.8	32	33.3	32.4	32.8	33.8	34.5	

자료: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World Bank(2001)/BIS(2001)/각국 중앙은행 통계.

도에도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구조조정 성과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헝가리는 1997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외신인도가 2~3단계 상향조정되었으며, 폴란드도 1~2단계 상향조정되었다. 다만 1997년에 통화위기를 경험하였던 체크는 대외신인도가 그대로 이거나 1단계 오히려 하향조정이 이루어졌다(〈표 4-6〉 참조).

〈표 4-6〉 중 · 동구 주요국의 대외신인도

구 분	Moody's		S&P		IBCA	
	1997년 7월	2001년 12월	1997년 7월	2001년 12월	1997년 7월	2001년 12월
폴란드	Baa3	Baa1	BBB-	BBB+	BBB	BBB+
헝가리	Baa3	A3	BBB-	A-	BBB	A-
체 크	Baa1	Baa1	A	A-	A-	BBB+

자료: Deutsche Bank. *Focus Eastern Europe Online*.

제2장 1～2절의 동구 12개 체제전환국 금융위기경험으로 잠시 되돌아가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은행구조조정이라는 전략보다 은행청산이라는 전략이 보다 적은 재정비용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용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은행청산이라는 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금융위기의 극복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극복 이후 각국의 금융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어느 정도 발전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전략을 채택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하였는가와 얼마만큼의 재정비용을 지출하고 위기를 극복하였는가는 별로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즉, 비용측면에서는 청산전략을 채택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금융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다. 또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위기를 극복한 국가들의 금융시스템이 반드시 보다 선진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표 4-7〉에서 금융위기를 경험한 동구의 12개 체제전환국 금융개혁에 대한 EBRD의 평가에 의하면, 은행구조조정 전략을 채택하여 보다 많은 재정비용을 지출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한 중 · 동구 국가들이 비교적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청산 전략을 채택하여 비교적 적은 재정비용을 지출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한 CIS 국가들은 아직까지 금융제도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산과 구조조정의 조합전략을 채택한 발틱 3국은 대체로 금융시스템의 발전정도가 중 · 동구와 CIS의 중간수준이었다. 그러나 중 · 동구 국가들 가운데 GDP의 20～40%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비용을 금융위기극복에 지출한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체크 등은 GDP의 7～13%로 비교적 적은 재정비용을 위기극복에 지출한 헝가리와 폴란드에 비해 금융시스템의 발전정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체크 등이 금융기관들의 부실정도가 특히 심했었고, 금융위기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위기가 계속 재발되는 경향이

〈표 4-7〉 동구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은행부문			증권시장 및 비은행 금융부문		
	1995	1997	2000	1995	1997	2000
중 · 동구						
- 불가리아	2	3-	3	2	2	2
- 체크	3	3	3+	3	3	3
- 헝가리	3	4	4	3	3+	4-
- 마케도니아	3	3	3	1	1	2-
- 폴란드	3	3	3+	3	3+	4-
발틱						
- 에스토니아	3	3+	4-	2	3	3
- 라트비아	3	3	3	2	2+	2+
- 리투아니아	3	3	3	2	2+	3
CIS						
- 그루지아	2	2+	2+	1	1	2-
- 카자흐스탄	2	2+	2+	2	2	2+
- 키르기즈스탄	2	3-	2+	2	2	2
- 우크라이나	2	2	2	2	2	2

注: 1은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 2는 기본적인 자유화 및 기초적인 제도가 형성되는 단계, 3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단계, 4는 모든 기준이 국제표준에 거의 근접한 상태, 4+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임을 각각 의미함.
자료: EBRD(1995, 1997, 2000).

있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재정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위기극복에 투여됨으로써 아직까지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발틱 3국 가운데 가장 적은 재정비용을 지출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한 에스토니아가 헝가리와 폴란드에 필적할만한 선진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도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하지만 에스토니아의 경우, 부실여신의 비율이 동구의 여타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가장 양호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구에서 1990~98년 동안 한번 이상 금융위기를 경험한 12개 체제전환국 가운데 헝가리, 폴란드 및 에스토니아 등의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개혁이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중

에서도 본 연구의 중점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헝가리와 폴란드의 금융구조조정 사례를 나머지 9개국과 비교하여 그들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운영구조조정(operational restructuring), 재무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 및 제도구조조정(institutional restructuring)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즉, 금융구조조정은 재무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경영합리화 및 내부지배구조 개혁 등의 운영구조조정과 함께 제도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를 견제하는 제도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금융기관의 성공적인 운영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데에는 민영화 전략이 유효하다. 특히 선진 외국은행을 민영화에 참여시키면 해당 금융기관 운영의 합리화는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이 강화되는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구조조정만 추진하면 금융위기의 극복이 지연되거나 위기가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도 기업의 부실이 정리되지 않고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면 이로 인해 다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된다. 체크는 금융구조조정 이후 기업부실이 다시 금융부문의 부실을 야기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폴란드는 기업구조조정을 금융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은행과 공기업의 종합적인 구조조정 계획과 연계시킴으로써 금융구조조정에 성공한 사례로 유명하다.[57]

57) 폴란드는 은행이 공기업에 대한 부실채권을 자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연체 공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의 구조조정협정을 맺은 경우에만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퇴출시킴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켰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elka and Krajewska(1998) 참조.

제5장 결론

EU 확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스웨덴 예테보리의 EU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확정됨에 따라 최근 중 · 동구로의 EU 확대가 유럽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것은 2002년까지 후보국들과 EU 가입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들을 2004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EU 확대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천명한 것이었다.

향후 EU 확대 전망에는 가입협상의 진행속도, 후보국의 정치 · 경제 상황, 기존 EU 회원국들의 정치적 결단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EU 확대는 조기가입을 희망하는 선발국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후발국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4~5개의 1차 가입후보국들을 우선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예테보리 정상회담 이후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1차 가입후보국에는 중 · 동구 주요 3개국 가운데 헝가리와 체크가 포함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며, 폴란드가 포함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 · 동구 주요국의 EU 가입과 관련하여 EU측은 가입후보국들에 대해 EU 가입 이전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EU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동구 체제전환국들의 경제개혁에 있어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가입후보국들의 금융부문 개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결론에 해당하는 본 장에서는 중 · 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추진과정에서 상당부분 진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 발전전망과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헝가리, 폴란드 등 개혁선도국들의 금융구조조정 경험이 후발 체제전환국들의 향후 금융부문 개발에 어떠

한 시사점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1.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 당면과제 및 발전전망

EU 가입과 관련하여 중 · 동구 주요국들이 자국의 금융부문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만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EU 가입과 함께 지난 1999년 초에 출범한 유럽의 경제 · 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영국과 덴마크에게 공여했던 것과 같이, EU에는 가입하면서도 EMU에는 참여하지 않는 EMU의 예외조항(opt-out-from-EMU clauses)을 더 이상은 신규가입국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58] 따라서 2004년 EU 가입을 기대하고 있는 중 · 동구 국가들은 EU와 EMU 가입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중 · 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가입규약과 관련하여 일부 가입국은 공동농업정책(CAP)이나 환경기준 등의 부문에서 원칙적으로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통화부문에서도 이와 같은 과도기간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과도기간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EMU 참여 즉시, 실질환율을 균형상태로 접근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될 경우 EMU 참여시점에 완전히(irrevocably) 고정되는 환율수준은 이내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불충분한 상태로 EU와 구조적 수렴 내지 경제 · 금융통합을 진행시키는 신규가입국은 단일통화지역내에서 비대칭적 충격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는 곧 양측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신규가입국을 위한 과도기

58) Heliodoro and Feldman(1998), p. 24 참조.

간은 그 분야나 수, 그리고 기간(duration)을 최대한 제한한다는 것이 EU 내부의 합의(consensus)[59]이며, 대부분의 EU 가입후보국들 또한 가능한 빨리 EMU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가입후보국들의 EU 가입 이후 EMU 가입에 필요한 과도기간은 최소화될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간의 설정여부 혹은 설정기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앞으로 EU의 신규가입국들은 반드시 EMU에 가입해야 하는바, EU측은 중 · 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전하고 효율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금융부문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신규가입국의 금융부문이 취약할 경우, ECB의 통화정책은 신규가입국에게 EMU 핵심참가국에 비해 비대칭적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신규가입국이 경기순환의 주기를 맞추기(cyclical synchronization)가 어렵게 되어 ECB가 공동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EMU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는 통화동맹 내부의 구조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일례로 중 · 동구 은행부문에 경쟁이 불충분할 경우, 통화정책을 변화시켜도 은행여신 금리가 이에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결국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EU 가입 이전에 중 · 동구 국가들의 금융부문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또다른 배경으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정부의 특권적인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과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통화동맹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자본시장이 제도적으로 잘 발전되어 있고 그 규모도 커야만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금지조항을 위배하지 않는 간접적인 통화관련 규제수단이 유효하다. 완전한 자본자유화 또한 자국의 금융부문 발전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 ·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이 현재 EMU 회원국들

---

59) 이에 대한 합의는 EU 집행위원회가 「Agenda 2000」을 통해 제안함.

〈표 5-1〉 중 · 동구 주요국 금융제도의 발전현황(2000년)

(단위: 지수[1])

	은행개혁 이자율 자유화	증권시장 비은행금융기관	평균	표준편차[3]
에스토니아	3.7	3.0	3.35	-0.71
폴란드	3.3	3.7	3.50	-0.40
슬로베니아	3.3	2.7	3.00	-1.41
체크	3.3	3.0	3.15	-1.11
헝가리	4.0	3.7	3.85	0.30
1차 가입후보국 평균	**3.52**	**3.22**	**3.37**	**-0.67**
불가리아	3.0	2.0	2.50	-2.42
라트비아	3.0	2.3	2.65	-2.12
리투아니아	3.0	3.0	3.00	-1.41
루마니아	2.7	2.0	2.35	-2.73
슬로바키아	3.0	2.3	2.65	-2.12
2차 가입후보국 평균	**2.94**	**2.32**	**2.63**	**-2.16**
EMU 저소득국 평균[2]	**3.70**	**3.70**	**3.70**	**0.00**

주: 1) 가장 미발달되어 있는 최저수준 1로부터 선진국과 같은 단계인 최고수준 4.3까지 제도의 발전단계를 지수화함.

2) EMU 12개 회원국 가운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순으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4개국 평균

3) EMU 저소득국 평균과의 표준편차

자료: EBRD(2000)를 기초로 Schweickert(2001) 측정.

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하였는지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 5-1〉에서 금융제도의 발전현황을 살펴보면, 중 · 동구 주요국은 EMU 저소득국 수준에 거의 수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헝가리의 금융제도는 EMU 저소득국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폴란드는 EMU 저소득국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으며, 체크는 발틱의 에스토니아보다 다소 낮은 단계이나, EMU 저소득국과의 편차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표 5-2〉에서 자본시장의 발전현황을 살펴보면, 중 · 동구 주요국은 아직 EMU 저소득국에 비해 상당부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공채에 대한 신용등급은 중 · 동구 주요 3국 모두 슬로베니아보다

〈표 5-2〉 중 · 동구 주요국 자본시장의 발전현황(1998/2000년[1])

	장기공채 신용등급(지수)				자본공급(GDP대비 %)			
	국내	해외	평균	표준편차	은행신용	주식시장규모	합계	표준편차[2]
에스토니아	6.5	6.0	6.25	-1.06	32.24	9.98	42.22	-2.09
폴란드	7.5	6.0	6.75	-0.79	36.48	12.90	49.38	-1.96
슬로베니아	8.5	7.0	7.75	-0.26	40.12	12.55	52.67	-1.90
체크	8.0	6.5	7.25	-0.53	64.29	21.36	85.65	-1.27
헝가리	7.0	6.0	6.50	-0.93	49.20	29.34	78.54	-1.41
1차 가입후보국 평균	**7.50**	**6.30**	**6.90**	**-0.71**	**44.47**	**17.23**	**61.69**	**-1.73**
불가리아	3.5	3.0	3.25	-2.64	18.13	8.09	26.22	-2.39
라트비아	6.5	5.5	6.00	-1.19	17.21	5.97	23.18	-2.45
리투아니아	6.0	5.0	5.50	-1.45	13.08	10.00	23.08	-2.45
루마니아	2.5	2.0	2.25	-3.17	23.92	2.66	26.58	-2.39
슬로바키아	6.0	4.5	5.25	-1.59	67.50	4.74	72.24	-1.53
2차 가입후보국 평균	**4.90**	**4.00**	**4.45**	**-2.01**	**27.97**	**6.29**	**34.26**	**-2.24**
EMU 저소득국 평균[2]	**8.25**	**8.25**	**8.25**	**0.00**	**94.52**	**58.63**	**153.15**	**0.00**

주: 1) 신용등급은 2000년 기준, 자본공급은 1998년 기준임.
2) 〈표 5-1〉 참조.
자료: Schweickert(200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신용 및 주식시장규모 등 자본공급 측면에서도 중 · 동구 주요국은 EMU 저소득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권의 금융부문을 크게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전자에 해당되며, 미국과 영국의 금융시스템은 후자에 속한다. 중 · 동구 주요국에 대한 독일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중 · 동구의 금융시스템도 전자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하지만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시스템이 앞으로 어느 형태로 발전하든지 전술한 바와 같이 EU 가입을 앞

〈표 5-3〉 중 · 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미비점

	헝가리	폴란드	체 크	비 고
금융부문 총자산규모 (1998년 GDP 대비, %)	63	47	85	198[1)]
무수익여신비율 (2000년 말 기준, %)	3	16	19	5[1)]
상업은행의 민간부문 대출 (2000년 GDP 대비, %)	22	26	48	91[2)]
주식 · 채권시장규모 (2000년 GDP 대비, %)	51	42	36	178[3)]

注: 1) OECD 평균, 2) EU 평균, 3) 독일

자료: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World Bank(2001)/BIS(2001)/EBRD(2001)/각국 중앙은행 통계.

두고 금융부문의 선진화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첫째,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은 매우 미약하다. 1998년 기준 OECD 평균 금융부문 규모는 GDP 대비 198% 인데 비해, 중 · 동구 주요국 중 가장 규모가 큰 체크가 GDP 대비 90% 정도에 불과하다. 헝가리의 금융부문 규모는 60%를 겨우 넘고 있으며, 폴란드는 5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0)] EU 가입을 염두에 두고 금융관련 제도를 EU 표준에 일치시키고, 은행위기를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하였지만, 아직까지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 금융중개능력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둘째, 금융부문의 구조 또한 선진국에 비해 아주 취약하다. OECD 평균

60) Kawalec and Kluza(2001), pp. 30～33.

〈그림 5-1〉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부문 구조(1998년)

(단위: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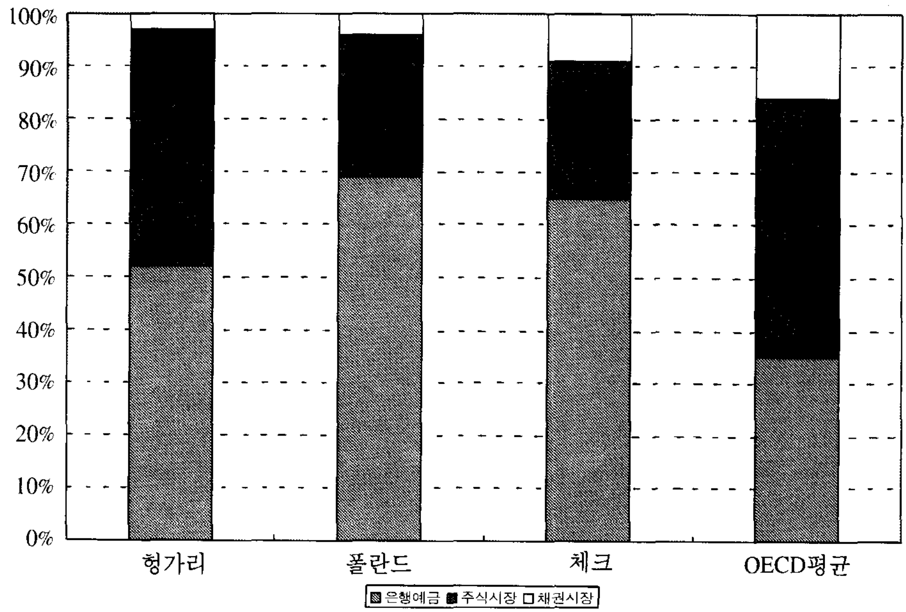

자료: Kawalec and Kluza(2001), pp. 30~40.

금융부문 구조는 은행예금이 35%, 주식시장자본이 49%, 채권시장규모가 16%를 각각 전체 금융부문으로부터 담당하고 있다.[61] 반면 금융부문 구조 측면에서 가장 양호한 헝가리는 은행예금이 50%를 초과하고 있고, 주식시장자본이 45%를 다소 상회하고 있으며, 채권시장규모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와 체크의 경우 은행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하였으며,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채권시장규모가 매우 미약하였다. 따라서 중 · 동구 주요국은 앞으로 금융부문 개발에 있어 예금, 주식, 채권 등 3가지 시장을 조화롭게 활성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아직까지 개선

61) *Ibid.*, p. 33.

할 여지가 많다. 체크의 경우는 특히 건전성 측면에서 아직 부실여신의 비중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2001년 들어 체크는 그동안 지연되어오던 은행의 민영화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구체제로부터 유래된 정부-은행-기업간 부실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지배구조개선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국내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최근 중·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예대마진의 급격한 축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금융부문은 이자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기존의 은행수익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를 확대하여 수익선을 다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동구 주요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의 금융부문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최근 EU측이 집중적인 개발을 주문하고 있는 분야와 현재 중·동구 주요국 금융부문의 발전단계를 감안하면, 향후 이들 금융부문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62]

첫째, 금융기관의 내부 및 외부지배구조(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structures)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EU측은 내부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경영진과 주주에게 부실경영과 이를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행을 정착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구 주요국의 정책당국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했던 부적절한 위험관리,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하고 감사제도도 강화하여 경영진의 무리한 영업활동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내부지배구조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규율, 감독기능 등 외부지배구조(external governance)의

62) Bokros(2001), pp. 25～27.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EU측은 시장규율과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의해 불건전 금융기관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EU측은 중·동구 주요국 가운데 주로 체크에 한정된 사항이지만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 및 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둘째, 자국내 금융시장의 경쟁 심화는 물론 국제금융시장 참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먼저 중·동구 주요국의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경쟁제한적 규제를 철폐하고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진출입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시장에서 경쟁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이밖에 민영화를 지속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M&A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경간 자본이동의 완전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EU측의 권고사항이다.[63]

셋째, 건전성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금융부문에 대한 신뢰회복 계기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EU측은 중·동구 주요국의 감독당국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설립과 인가 또는 대주주 및 경영진 교체시 이들이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불건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강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전성 감독 관련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적정자본금의 유지, 리스크 관리제도의 운영 등을 의무화하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절차를 개선시키고, 사외감사 선임요건 변경 등을 통해 감사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63) 헝가리는 이미 지난 2001년 5월 4일 IMF 4조국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환자유화법이 발효되는 지난 6월 15일부로 자본이동의 완전자유화가 실시되었다.

2. 동구의 후발 체제전환국에 대한 시사점

전반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구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으며, 舊소련으로부터 독립한 CIS와 발틱 국가들은 다소 늦은 1990년대 초반부터 체제전환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체제전환 착수의 시기가 다소 다르다는 측면보다는 이들 체제전환국들이 경제개혁을 추진할 당시 초기조건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측면이 최근 이들의 경제개혁 수준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헝가리, 폴란드, 체크 이른바 개혁선도국이라 불리는 중 · 동구 주요국들은 여타 체제전환국들에 비해 경제개혁 추진 당시, 정치 · 경제적 초기여건이 양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체제전환정책을 채택하여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여타 체제전환국들보다 제약이 적었다. 이처럼 1990년대 동안 CIS를 포함한 동구 국가들이 추진한 경제개혁은 그 수준과 성과가 국가 혹은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말 단일은행체제를 이원적 은행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금융개혁, 그후 발생한 은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 그리고 최근 EU 가입을 위한 금융부문 개발 등,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은 전반적인 경제개혁에 비해 국별 혹은 지역별로 더욱 다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CIS를 포함한 동구 체제전환국들의 현재 금융부문 개발단계 또한 많은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개발수준에 따라 동구 체제전환국들을 다음과 같이 5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금융부문 개발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선진국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는 개혁선도국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포함된다. 둘째는 개혁선도국 그룹을 부지런히 뒤좇고 있으나, 이에 다소 못미치는 개혁도상국 그룹이며, 여기에는 체크와 슬로베니아가 해당된다. 셋째는 구체제와 신체제가 혼재하고 있는 부분개혁국 그룹이며, 크로아티아와 슬로바키아가 이 그룹에 속한다.

넷째는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개혁실패국 그룹이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이 금융부문이 제일 취약하여 언제든지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재발위험국 그룹이다.

이처럼 동구 체제전환국들을 금융부문의 개발 정도에 따라 5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 금융여건의 특징들을 12개 항목으로 분석하면,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자국의 금융부문 수준이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 이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혁이나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가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체코가 개혁선도국 수준으로 자국의 금융부문을 향상시키려면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규모 은행 민영화에 대한 다소간의 저항과 자본이동의 완전자유화에 대한 일부 반대를 극복하고 전략적 외국인투자자[64]에게 대규모 은행을 민영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배구조의 개선과 자본시장 개발 등이 주요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 등 개혁선도국 그룹의 금융구조조정 사례는 물론 체크의 금융구조조정 진행사항도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향후 자국의 금융부문 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매우 유익한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미진한 부분개혁국 그룹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개혁실패국 그룹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헝가리, 폴란드, 체크 등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 경험이 귀중한 정책대안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4) 주로 다국적 세계 메이저 금융기관

〈표 5-4〉 동구 체제전환국의 금융부문 개발정도 구분

그룹	각 그룹별 금융부문 개발정도
개혁선도국	① 전략적 외국인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대형은행 통제 ② 외국자본이 전체 은행시스템에서 지배적인 위치 점유 ③ 대부분의 은행들이 여신포트폴리오, 적정준비금, 자기자본비율 등이 양호 ④ 내부지배구조의 서구 수준 근접 ⑤ 법인영업에 있어 서비스 질의 급격한 개선 ⑥ 소매금융부문의 급격한 발전, 광범위한 서비스개발 ⑦ 자본시장(정부채권 및 주식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유동성이 풍부 ⑧ 제도의 선진화 완료, 규정의 적용기법 개선이 진행 중 ⑨ 경쟁적 환경 조성, 진·출입 규정 양호 ⑩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의 완전자유화 ⑪ 민영화에 대한 저항 극복 ⑫ 연금개혁 및 기금관리 선진화단계
개혁도상국	① 대형은행들이 아직 정부의 통제하에 있거나 최근에 막 민영화됨 ② 전략적 외국인투자자들의 진입에 냉담함 ③ 선도 은행들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이거나 최근에 완료 ④ 대형은행들을 제외한 중간 이하 규모 은행들의 포트폴리오는 비교적 건전함 ⑤ 지배구조개선 필요 ⑥ 서비스의 질과 소매금융이 최근 개발 중 ⑦ 자본시장이 비교적 소규모, 다소 유동성 부족 ⑧ 제도는 개선 중이나 적용기법 미흡 ⑨ 국내금융서비스에서 경쟁 심화 중 ⑩ 비은행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개혁조치 필요 ⑪ 추가적인 자유화에 반대 및 다소의 저항 지속 ⑫ 연금개혁 및 기금관리는 아직 초기단계
부분개혁국	① 대형은행들이 전략적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각되고 있거나, 매각될 예정임 ② 구조조정 추진된 모든 은행들에 대해 민영화 강력히 촉구 ③ 지급불능에 처한 다수의 은행들이 아직 구조조정 중이거나 청산됨 ④ 몇몇 중견은행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신포트폴리오가 매우 불량함 ⑤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가 매우 제한적 ⑥ 서비스의 질과 소매금융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중 ⑦ 자본시장이 협소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며, 외국인 참여율이 낮음 ⑧ 제도는 개선 중이나 여전히 소극적이며,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떨어짐 ⑨ 경쟁이 매우 취약하며 지역별 혹은 분야별로 시장이 분리되어 있음 ⑩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은 아직 초보 수준 ⑪ 국경간 자본거래의 자유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아주 진지함 ⑫ 재정적,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여 연금개혁은 거듭 연기됨

〈표 5-4〉 계속

그룹	각 그룹별 금융부문 개발정도
개혁실패국	① 일부 지급불능에 처한 대형은행들이 아직 정부의 통제하에 있음 ② 전략적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부실은행들을 매각하려는 시도 여러 차례 실패 ③ 다수의 지급불능 은행들에 대해 구조조정이나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 ④ 신용거래자가 거의 없어 건전한 포트폴리오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⑤ 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가 극히 제한적 ⑥ 서비스의 질은 아주 천천히, 소매금융은 보다 빠르게 개선됨 ⑦ 자본시장이 매우 협소하고 유동성이 없으며, 외국인의 참여가 적음 ⑧ 제도는 개선 중이나,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떨어지고 예측성이 결여됨 ⑨ 경쟁이 매우 취약하고 외국은행 지점이 매우 제한적인 역할 수행 ⑩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은 아직 초보 수준 ⑪ 국경간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아직 추진되지 않음 ⑫ 기관투자자 부족, 연금개혁은 뒷전
위기재발위험국	① 대부분의 은행들이 민간은행이며,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함 ② 선택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략적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냉담 ③ 다수의 은행들에 대한 면허취소와 청산이 필요 ④ 포트폴리오가 매우 불량하며,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⑤ 부패, 범죄, 관료주의 만연 ⑥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고 소매금융은 이제 초보단계 ⑦ 자본시장은 협소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며, 오용되는 경향이 있음 ⑧ 제도가 취약하며, 제도의 적용은 공개적으로 정치적임 ⑨ 국내시장은 붕괴 직전이며 독점되고 있음 ⑩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⑪ 금융자유화에 대해 매우 적대적임 ⑫ 재정적 위기의 만연으로 연금개혁은 고려대상이 아님

자료: Bokros(2001), pp. 13~27로부터 필자 정리.

참고문헌

〈국내문헌〉

남주하 · 권재중. 1999.『잠재 부실채권규모 및 추가 금융구조조정 자금규모의 추정과 분석』.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세계은행EDI · 한국금융연구원. 1998.『금융위기 대응방안: 한국에 대한 교훈』.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예금보험공사. 2001.『금융구조조정의 방법과 사례』. 연구총서 2001-1.

오정근. 1999.『우리나라 은행민영화의 경험과 시사점』. 금융경제연구 1999. 10 제98호. 서울: 한국은행.

왕윤종 외. 2000.『한국의 IMF 프로그램 3년』. 용역보고서 2000년 12월.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위정범. 1999. 7. 13.「제1차 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 매일경제신문사 공동 주최 정책세미나: 제1차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2000. 12.『구조조정과 시장경제』.

조윤제. 2000. 12.「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와 과제」. 제6차 한 · 미 21세기위원회 보고서. 서울: 세계경제연구원.

한국은행. 1999.『주요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조사자료연구 99-17.

______. 2000. 9.「북유럽 금융위기 경험국의 경제개혁과 그 성과」.『조사통계월보』. 조사국 해외조사팀.

최희갑. 2001. 5.『금융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 은행업을 중심으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한정철. 1998.「中 · 東歐 體制轉換國의 부실채권 처리현황과 시사점」.『季刊 對外經濟政策研究』, 1998년 여름호.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______. 1999.「中 · 東歐 주요 體制轉換國의 은행시스템 발전현황과 과제」.『季刊 對外經濟政策研究』, 1999년 겨울호.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______. 1998.「中 · 東歐 體制轉換國의 不實債權 처리현황과 시사점」.『季刊 對外經濟政策研究』, 1998년 여름호. 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해외문헌〉

Balcerowicz, Ewa and Andrzej Bratkowski. 2001. *Restructuring and Development of* *the Banking Sector in Poland; Lessons to be Learnt by Less Advanced Transition Countries*. Case Reports No. 44,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Warsaw.

Banker. 1999. Financial Times. (July).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1997. *Core Principles of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BIS. Basle.

Begg, David K. H.. 1996. *Monetary Poli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essons After Half a Decade of Transition.* IMF Working Paper 96/108. IMF.

Belka, Marek and Anna Krajewska. 1998. "The Polish Bank and Enterprise Restructuring Programme: Expectations and Reality." in Balcerowicz et al.

BIS. 2001. *The Banking Industry in the Emerging Market Economies: Competition, Consolidation and Systemic Stability*. BIS Papers No. 4. (August).

Bokros, Lajos. 2001. "A Perspective on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Financial Transi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Challenges of the New Decade*, Edited by Bokros, Lajos, Alexander Fleming, and Cari Votava. The World Bank. (July).

Bonin, John P., and Mark E. Schaffer. 1995. "Banks, Firms, Bad Debts and Bankruptcy in Hungary 1991-94." Center for Economic Performance Discussion Paper No. 234 (April).

Caprio, Gerard Jr. and Ross Levine. 1994. *Reforming Finance in Transition Socialist Economies*. Vol. 9. No. 1. (January).

Cull, Robert. 1998. "How Deposit Insurance Affects Financial Depth."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875*. Washington: World Bank. January.

Daniel, James A.. 1997. "Fiscal Aspects of Bank Restructuring." IMF Working Paper No. 97/52 (Washington: IMF, April).

Deutsche Bank. *Focus Eastern Europe Online.*

______. 2001. *EU Enlargement Monitor.*

EBRD. 1995~2001. Transition Report.

Fleming, Alex, Lily Chu, and Marie-Renee Bakker. 1996. "The Baltics - Banking Crises Observed."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647.* Washington: World Bank. September.

Garcia, G.. 1997.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Assessment." *Systemic Bank Restructuring and Macroeconomic Policy*, ed. by Alexander et al., IMF.

Garcia, Gillian G. H. 1999. "Deposit Insurance: A Survey of Actual and Best

Practices." IMF Working Paper No. 99/54. Washington: IMF. April.

Gray, Cheryl W., and Arnold Holle. 1996a. "Bank-led Restructuring in Poland. Bankruptcy and its Alternativ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Paper No. 1651 (Washington: World Bank, September).

Gray, Cheryl W., and Arnold Holle. 1996b. "Bank-led Restructuring in Poland. An Empirical Look at the Bank Conciliation Process."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Paper No. 1650 (Washington: World Bank, September).

Heliodoro, Temprano-Arroyo and Robert A. Feldman. 1998. *Selected Transition and Mediterranean Countries: An Institutional Primer on EMU and EU Relations*. IMF. Working Paper 98/82. (June).

IMF. 1998.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Developments, Prospects, and Key Policy Issues*. (September).

______. 1999.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______. 2001. *Czech Republic: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No. 01/113. (July).

Kane, E.. 1985. *The Gathering Crisis in Deposit Insurance*. MIT Press.

Kawalec, Stefan and Krzysztof Kluza. 2001. "Challenges of Financial System Development in Transition Economies." *Financial Transi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Challenges of the New Decade*. Edited by Bokros, Lajos, Alexander Fleming, and Cari Votava. The World Bank. (July).

Kawalec, Stefan. 1999. *Banking Sector Systemic Risk in Selected Central European Countries*.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Warsaw.

KOB. 2001. *Annual Report 2000*. published by Konsolidacni Banka Praha, s. p. u. (May).

McKinnon, R.. 1991. *Taxation, Money, and Credit in Liberalizing Socialist Economies: Asian and European Experiences*. Stanford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es.

NBH(National Bank of Hungary). 2001a. *Annual Report 2000*. Budapest. (April).

______. 2001b. *Report on Financial Stability*. Budapest. (May).

NBP(National Bank of Poland). 2001. *Summary Evaluation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Polish Banks 2000*. Warsaw. (April).

OECD. 1995. *Economic Surveys: 1995 Hungary*. Paris.

______. 1996. *Economic Surveys: 1995~1996 Czech Republic*. Paris.

______. 1997. *The New Banking Landscap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untry*

Experience and Policies for the Future. OECD Proceedings.

______. 1998a. *Economic Surveys: 1998 Poland*. Paris.

______. 1998b. *Economic Surveys: The Czech Republic*. Paris.

______. 1999. *Economic Surveys: 1999 Hungary*. Paris.

Schweickert, Rainer. 2001. "EU-Enlargement and the Euro - One Money for all the Europ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Vol. 5, No. 2. Seoul: KIEP. (December).

Sheng, A.. 1996. *Bank Restructuring: Lessons from the 1980s*. World Bank.

Stepanek et al.. 1995. "Czech Republic: Country Monograph." paper prepared for the research project. *The Fiscal Crisi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under Transition*. Ministry of Finance. Czech Republic.

Sundararajan, V. and T. Balino. 1991. "Issues in Recent Banking Crises." *Banking Crises: Cases and Issues*. ed. By Sundararajan V. and T. Balino. IMF.

Tang, H., E. Zoli, and I. Klytchnikova. 2000. *Banking Crises in Transition Countries: Fiscal Costs and Related Issu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vember).

Van Elkan, Rachel. 1998. "Financial Markets in Hungary." in Carlo Cottarelli and others. *Hungary: Economic Policies for Sustainable Growth*. IMF Occasional Paper No. 159.

Van Wijinbergen, Sweder. 1996. "Bank Restructuring and Enterprise Reform." paper presented at the EBRD Conference on Policy Studies to Promote Private Sector Development. London. (April).

Vojtisek, P.. 1993. "Restructuring of the Banks in the Former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Transition of the Banking System*. OECD. Paris.

World Bank. 1997. *Poland: Country Economic Memorandum*. Report No. 16858-POL. (July).

______. 2001. *Financial Transi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Challenges of the New Decade*. Edited by Bokros, Lajos, Alexander Fleming, and Cari Votava. The World Bank. (July).

Wyczanski, Pawel. 1993. *The Polish Banking System 1990-1992*. Friedrich-Ebert Stiftung Polen. Economic and Social Policy Series No. 32. Warsaw.

부 록

〈부록 1〉 헝가리의 금융구조조정 관련일지

기 간	내 용
1987. 1	- 은행법 개정(二元的 은행제도 도입)
1990. 4	- 국가자산청(State Property Agency) 설립
1990. 6	- 증권거래소 개장
1990. 10	- 新은행법 제정
1991~92	- 1차 은행위기: 국영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 직면, 은행시스템내 부실여신 비율 20.7%로 급증
1991. 9	- 파산법 채택
1991. 12	- 중앙은행법 및 은행법 再개정
1992. 1	- 부실여신 전담기구 신용통합기금(Credit Consolidation Fund) 설립
1992. 12	- 부실여신통합프로그램(consolidation programme for non-performing loans) 추진
1993~94	- 2차 은행위기: 국영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 재발, 은행시스템내 부실여신비율 30%에 육박
1993. 1	- BIS 적정자본기준 적용
1993. 9	- 파산법 개정
1993. 12	- 은행통합프로그램(bank consolidation programme) 추진 - 가교은행(bridge bank)인 umbrella bank 신설
1994. 1	- 채무자조정프로그램(debtor reconciliation programme) 추진
1994. 5	- 은행통합프로그램에 따른 은행들에 대한 2단계 증자조치 실시
1994. 7	- 최초의 은행민영화 추진
1994. 12	- 은행통합프로그램에 따른 은행들에 대한 3단계 증자조치 실시
1995	- 3차 은행위기: 국영은행 Agrobank 지급불능사태 직면
1995. 7	- 건전은행/부실은행(good bank/bad bank) 접근방법으로 Magyar Hitel Banka 민영화
1996. 12	- 중앙은행법 개정 및 금융감독법 채택
1997	- 4차 은행위기: 헝가리 2대 소매금융은행 Postabank 예금인출사태 직면, 소규모 민영은행들 지급불능사태 직면
1997. 1	- 新은행법 제정
1998. 1	- 외국은행의 자회사를 비롯한 지점 설치 허용
1999. 1	- 은행부문의 중개 및 투자은행 업무 취급 허용 - BIS 新적정자본기준 적용

자료: 필자작성.

〈부록 2〉 폴란드의 금융구조조정 관련일지

기 간	내 용
1989. 1	- 은행법 개정(二元的 은행제도 도입)
1991	- 1차 은행위기: 1989년 평가절하에 의해 4개의 국영은행들이 심각한 환차손에 직면
1991. 4	- 증권거래소 개장
1991. 9	- 新은행법 제정
1992	- 2차 은행위기: 국영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 재현, 은행부문의 부실여신 비율 30% 육박
1992. 1	- 9개의 국유상업은행들에 자체적인 부실채권 전담반 설치 지시
1992. 12	- 은행법 개정
1993~94	- 3차 은행위기: 중앙은행으로부터 특화된 2개의 국영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가 거듭
1993. 2	- 금융구조조정법 채택
	- 기업 · 은행구조조정프로그램(Enterprise and Bank Restructuring Program; EBRP) 추진
1993. 4	- 최초의 은행민영화 추진
1993. 5	- BIS 적정자본기준 적용
1993. 9	- EBRP에 의해 7개 국유상업은행들에 대해 자본금 확충 실시
1994~98	- 4차 은행위기: 소규모 농협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s banks)들의 지급불능사태 직면
1994. 1	- 국제회계기준 적용
1994. 12	- 여신분류기준 강화
1996. 7	- 은행통합프로그램((bank consolidation programme) 추진
1997. 6	- 대외무역은행(Bank Handlowy) 민영화 추진
1997. 7	- 중앙은행법 개정
1998. 1	- 은행법 및 파산법 개정
1998. 10	- BPH(Bank Przemyslovo Handlowy) 민영화 추진
1999. 1	- BIS 新적정자본기준 적용
1999. 6	- PEKAO와 Bank Zachodni 민영화 추진

자료: 필자작성.

〈부록 3〉 체크의 금융구조조정 관련일지

기 간	내 용
1990. 1	- 新중앙은행법과 일반은행법 제정 · 발효 (二元的 은행제도 도입)
1991~93	- 1차 은행위기: 국영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 직면으로 부실여신 비율이 급격히 증가되어 30% 초과
1991. 3	- 부실채권처리 전담 통합정리은행(Konsolidacny Banka; KOB) 설립 - 민영화 전담 국가자산기금(National Property Fund; NPF) 설립
1991. 10	- 파산법 채택
1992. 2	- 중앙은행법 및 은행법 개정
1992. 5	- 최초의 은행민영화 추진
1992. 7	-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적용
1993. 1	- 체코슬로바키아가 체크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1993. 4	- 파산법 개정 - 증권거래소 개장
1994. 7	-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1995. 1	- 부실채권 충당금 규정 채택
1995. 10	- 과다위험노출 제한 규정 도입(단일 고객에게 은행 총자산의 25% 이상 대출 제한)
1995. 12	- 은행 자본의 15% 이내로 외환포지션 제한
1996~97	- 2차 은행위기: 새로운 제도 · 환경 적응에 실패한 신규상업은행들의 지급불능사태 여파로 총 18개 은행들이 지급불능사태 혹은 유동성위기 직면
1996. 1	- BIS 적정자본기준 적용
1997. 5	- 외환위기
1998. 1	- 파산법 2차 개정 -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2차 강화
1998. 3	- IPB 민영화 추진
1998. 9	- 은행법 2차 개정
1999. 1	- BIS 新적정자본기준 적용
1999. 6	- CSOB 민영화 추진
2000. 5	- 新파산법 채택
2001	- KOB를 체크통합청(Ceska Konsolidacni Agentura; CKA)으로 개명, 상업성 강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 Komercni Banka와 Ceska Sporitelna 민영화 추진

자료: 필자작성.

〈부록 4〉 중 · 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전망

□ 2000년 12월 EU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골격이 프랑스의 니스에서 완성된 이후 6개월 뒤인 지난 6월 15일 스웨덴의 예테보리(Göthenburg)에서는 EU확대계획의 구체적인 일정이 처음으로 확정됨.

-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르면, 늦어도 2004년에는 EU의 중 · 동구 지역으로의 확대가 가시화될 전망이며, 적어도 2010까지는 중 · 동구 10개국과 사이프러스, 말타, 터키 등 현재 EU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총 13개국으로 EU가 확대될 전망임.

□ 중 · 동구 10개 후보국들의 EU가입협상 추이(2001년 7월말 현재)

	협상종료 분야	협상진행 분야	협상미착수 분야
헝가리	22	7	-
폴란드	17	12	-
체코	19	10	-
슬로베니아	21	8	-
에스토니아	19	10	-
슬로바키아	19	10	-
리투아니아	18	11	-
라트비아	16	13	-
루마니아	8	7	14
불가리아	11	8	10

자료: Deutsche Bank(2001), *EU Enlargement Monitor* (August).

□ Deutsche Bank에 따르면, 60% 확률의 가능성이 있는 향후 EU확대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EU가입을 위한 경제적 수렴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제외한 중 · 동구의 8개 후보국이 모두 2005년에 EU에 가입하고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8년 이후에나 EU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임.

- 上記 시나리오는 중 · 동구의 8개 후보국들이 2004년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3년 말까지 EU가입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체결된 협정이 비준절차를 거치는 데 18~24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제시된 것임.

〈부록 4〉 계속

- 또한 Deutsche Bank는 上記 8개국을 EU가입협상 진행정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제1그룹이 2004년에 EU에 가입하고 제2그룹은 2006년에 가입하는 것을 20% 확률의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1그룹은 헝가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크 등 4개국, 제2그룹은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3개국으로 확정하고 폴란드가 제1그룹 혹은 제2그룹에 속할 확률은 다시 50:50으로 설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Deutsche Bank가 제시한 20% 확률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EU가입협상 진행속도에 따라 헝가리와 슬로베니아가 2003년, 체크와 에스토니아가 2004년,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2005년, 그리고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가 2006년에 각각 EU에 가입하는 것임.

□ 이러한 Deutsche Bank의 EU확대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는 예테보리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EU확대계획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제시된 것이다.

- 즉, 스페인의 EU확대 이후 보조금 축소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폴란드의 EU가입협상 난항, 아일랜드의 니스조약 비준거부 등으로 예테보리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EU확대계획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고려된 전망임.

□ 따라서 예테보리 정상회담까지의 상황을 추가로 고려하여 上記 3가지 시나리오를 다소 수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임.

-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예테보리 정상회담에서 확정된 EU확대일정을 적용하여 중·동구 8개국의 가입예상연도를 2005년에서 2004년으로 단축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에는 별다른 수정이 없으나, 각 시나리오별 확률을 재조정함.

- 지난 예테보리 정상회담에서 2002년까지 후보국들과의 가입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다소 빠른 일정이 설정됨에 따라 이러한 일정을 소화해낼 수 없는 국가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의 확률을 낮추고 두 번째 시나리오의 확률을 높임.

〈부록 4〉 계속

□ 최근 들어 후보국들이 모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괄가입방식 보다는 조기가입을 희망하는 선발국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후발국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4~5개의 1차 가입후보국들을 우선 가입시키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음.

□ 향후 EU확대전망 시나리오

Deutsche Bank 시나리오		예테보리 정상회담 결과를 고려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확률 60%)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크,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 2005년 가입 불가리아, 루마니아 → 2008년 이후 가입(이하 시나리오도 동일)	시나리오 1 (확률 40%)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크,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 2004년 가입 불가리아, 루마니아 → 2008년 이후 가입(이하 시나리오도 동일)
시나리오 2-1 (확률 10%)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크, 에스토니아 → 2004년 가입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 2006년 가입	시나리오 2-1 (확률 20%)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크, 에스토니아 → 2004년 가입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 2006년 가입
시나리오 2-2 (확률 10%)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크, 에스토니아, 폴란드 → 2004년 가입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 2006년 가입	시나리오 2-2 (확률 20%)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크, 에스토니아, 폴란드 → 2004년 가입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 2006년 가입
시나리오 3 (확률 20%)	헝가리, 슬로베니아 → 2003년 체크, 에스토니아 → 2004년 폴란드, 슬로바키아 → 2005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 2006년	시나리오 3 (확률 20%)	헝가리, 슬로베니아 → 2003년 체크, 에스토니아 → 2004년 폴란드, 슬로바키아 → 2005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 2006년

자료: Deutsche Bank(2001), *EU Enlargement Monitor*(June)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Executive Summary

Lessons from Financing Restructur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Cases of Hungary,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Cheol-Won Lee

This research is aimed at assessing the business climate of the financial sectors in transforming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by reviewing how some have successfully progressed in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while others still suffer from problems ascribed to structural weakness. The research also attempts to identify enabling environment in Hungary and Poland and other leading performers for the successful resolution of non-performing loans (NPLs) in their banking sector and privatization of banks.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valuable policy lessons for countries which are still suffering from cumulative bad loan problems and need to privatize banks which had become state-owned in the early attempt to restructure financial industry.

Progress of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in selecte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s reviewed in two aspects: institutional reform and developments in financial indicators. The three countries Hungary,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stand out with their good performance in institutional restructuring, achievement of a stronger and more efficient financial system as well as recovery of confidence in the financial sector. The three countries, however, progressed differently in terms of soundness of financial indicators: while Hungary is identified as one of the leading performers and Poland follows closely behind, the Czech Republic has yet to resolve its bad loan problems. Still, all three countries have commonly underdeveloped financial intermediation even after restructuring policies. However, their high performance in terms of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has been enough to win wide recognition among investors and to nurture improved investment sentiment.

Mainly focusing on Poland, Hungary and Czech Republic together with neighboring transition economies,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three integral conditions for successful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First of all, successful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hinges on a harmonized undertaking of operational restructuring, financial restructuring and institutional restructuring. In other words,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should be targeted at market-oriented management and reform of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reshuffling of financial structure while a working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event deterioration of profitability and soundness has to be established.

Second, privatization or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private shareholders is considered essential to successful operational restructuring. Active participation of foreign banks armed with advanced management capability in the privatization process, for instance, will bring about rational management and strengthen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financial industry.

Third, financial restructuring with lagging enterprise restructuring tends to cause slower recovery from financial crisis or reignite crisis, at worst. Resolution of solvency problems in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futile if the enterprise sector keeps foot-dragging in restructuring efforts, as seen in the case of the Czech Republic. In contrast, Hungary and Poland carried out enterprise restructuring along with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to become successful restructuring cases in Eastern Europe. Poland, in particular, is lauded as a model case in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where the government provided financial aids for banks while leading state-owned companies to conduct full-blanket restructuring plans.

Countr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re now facing the following three tasks as their forthcoming admission into the European Union (EU) requires further strengthening of their financial sectors.

First, the share of the financial sector in the countries included in this study is still smaller tha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As of 1998, the average share of the financial sector in gross domestic product (GDP) for OECD countries was 198%, compared with 90% in the Czech Republic, the largest among the transforming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60% in Hungary, and 50% in Poland. In spite of efforts to harmonize financial institutions to be compliant with the EU standards and financial sector reform to deter the recurrence of a financial crisis, there anr still weaknesses in the financial sector of many transforming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us, this indicates the strong need for the promotion of financial intermediation services.

Most of all. the structure of the financial sector. which is weak in nature. should be fixed. In the average OECD countries, bank deposits account for 35% of the financial sector size, stock market capitalization for 49%, and corporate debt for 16%. In Hungary, considered the most advanced in terms of soundness of financial sector structure, bank deposits claim over 50%, while the share of the stock market hovers just above 45% and the bond market around 2%. In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bank deposits are close to 70%, reflecting that they are still in the early stage of bond market development. From these cases it can be concluded that many of the transforming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re required to come up with measures for harmonized development of bank deposits, and the stock and bond market.

Last but not least,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should focus on enhancing both soundness and efficiency. The recent reform drive in the Czech Republic, which has been noted for its still high ratio of bad loans, is focusing on removing the legacy of the collusiv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banking and enterprise sectors inherited from the socialist era. Such measures include corporate governance reform and promotion of market-oriented management and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ound financial sector. On one hand, enhanced competition in the domestic financial market results in increased efficiency in many countr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On the other hand, in the wake of more intensive competition, the quickly shrinking spread between deposit and lending rates entails reduced profitability in exchange for higher efficiency. It means there is still a strong need to diversify the income structure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increasing the scope and variety of financial products.

Taking the EU's admission requirements and the stage of financial development of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to account, policy makers in transition countries are recommended to target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for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First, they need to continue efforts to reform the 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structure of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policy maker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increasing competition in the domestic financial industry and more frequent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will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financial sector. Third, advanced prudential regulations and financial sector supervisory systems should be achieved to recover the credibility of the domestic financial sector.

Depending on the level of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transition economies in

Eastern Europe are divided into five groups. Countries in the leading performer group, such as Poland and Hungary have successfully completed financial restructuring and are deemed to have an advanced financial sector equivalent to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The second group of countries under reform, which include the Czech Republic and Slovenia are those trying to follow leading performers but still remain way behind. The slow reformers, such as Croatia and Slovakia, have both new systems and legacies incurred from the communist days. The fourth group, including Bulgaria and Romania, fall short in undertaking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while such countries as Russia and Ukraine from the fifth group have to be closely monitored due to higher risk of repetitive exposure to another financial crisis.

By grouping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assessing the status of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we can understand challenges and policy tasks countries are facing. Examining the experiences and challenges of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a useful model for financial restructuring policies in Eastern Europe and help policy makers in latecomer economies to come up with extensive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plans in the near future. For those countries which started their restructuring drive earlier but were less successful, findings from the experiences of Hungary,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and others will also enlighten them on ways to correct policy mistakes.

발간자료 목록 (1997~2001. 12)

■ 정책연구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金博洙·王允鍾·申東和·李炯根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王允鍾·鄭在完·金琮根·李鴻培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曺琮和 編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_S)평가/安炯徒 編著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1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李昌在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2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鄭仁敎 外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金益洙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崔秀雄

99-1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I(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2/黃祥仁·王允鍾·李晟鳳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3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李晟鳳 外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4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王允鍾 外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崔洛均·蔡 旭·金準東·安有哲·尹美京·徐暢培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金準東·姜仁洙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鄭余泉

00-04 WTO 뉴라운드 工産品協商의 시나리오별 實證分析과 韓國의 協商戰略/崔洛均·李明憲·朱文培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金準東·李長榮·李漢煐·金龍奎·崔重熹·許 琮·李漳源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의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鄭仁敎·李景姬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金準東·蔡 旭·梁俊晳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趙明哲·權 栗·李哲元·金恩志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金世稙·楊斗鏞·王允鍾·黃祥仁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尹昌仁 外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趙明哲·洪翼杓

00-13 WTO 뉴라운드協商의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蔡 旭·崔洛均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煥·庾相喜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李鍾華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宋有哲·朴芝賢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南相烈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黃祥仁·金寅培·辛仁錫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敎

■ 조사분석

97-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朴相守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鄭在完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鄭在完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李哲元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徐承源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鄭在完·權耿德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李聖揆·崔秉熙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金完仲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崔義炫

97-10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研究/蔡 旭

97-11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휘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李鎬生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權 栗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洪翼杓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金琮根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朴月羅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投資 制度/李炯根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羅成燮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전망/鄭仁敎·李昌在 編著

98-03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 과제/趙潤濟·金鍾燮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鄭聖哲·李明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李載裕·李載榮

98-08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朴泰鎬·文宇植·白珍鉉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孫正植·韓弘烈

98-10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통상환경의 변화/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蔡 旭·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金裕燦·李晟鳳

99-01 OECD연구시리즈②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李晟鳳·李炯根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金琮根

00-01 透明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朴映坤·金于珍·羅秀樺

00-02 주요 이슈별 韓·美 通商懸案 政策課題/梁俊晳·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金元鎬·姜文盛·羅秀樺·金眞梧

00-05 國際協力體 설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張亨壽·朴映坤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鄭在完

01-02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 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朴英鎬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孫讚鉉·尹眞那

■ Policy Analyses

00-01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is /Tae-Joon Kim · Jai-Won Ryou · Yunjong Wang

00-02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Chae-Shick Chung · Sangyoung Joo · Doo Yong Yang

01-0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Soyoung Kim · Sunghyun H. Kim · Yunjong Wang

■ Policy Papers

97-01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Inkyo Cheong

97-02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Honggue Lee · Jai-Won Ryou

97-03 Northeast Asia's Transbound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Approach/Sang-Don Lee · Taek-Whan Han

98-01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Chan-Hyun Sohn · Junsok Yang eds.

98-02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December 1997 - June 1998) /Yunjong Wang · Hyoungsoo Zang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00-01 南北經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趙明哲

00-02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李鍾華 · 李東輝 · 趙泓植

01-01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Korean Perspectives/Tae-jun Kim · Doo Yong Yang

01-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孫讚鉉 編

01-02 한 · 일 자유무역협정(FTA)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孫讚鉉 · 尹眞那

01-03 한 · 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孫讚鉉 編

01-04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姜文盛 · 羅秀燁

01-05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이성봉 · 심상렬 · 왕중식

■ 행사결과보고/Conference Proceedings

97-01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Young-Rok Cheong ed.

97-02 제5次APEC頂上會議의 意義와 對策 - APEC연구컨소시엄 라운드테이블/安炯徒 編

97-03 21세기 韓 · 中經濟의 비전과 同伴者關係의 모색 - 韓 · 中修交 53주년 세미나/鄭永錄 編

97-04 러시아의 外國人投資環境과 韓 · 러關係 /李昌在 · 金秉熙 編

97-05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Bak-Soo Kim ed.

98-01 新政府의 輸出支援戰略과 通商政策課題: GATT/WTO 체제 50주년기념 정책세미나/孫讚鉉 編

98-02 Korea and Central America: Toward a New Partnership in Changing Environments/Won-Ho Kim ed.

98-03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Mikyung Yun ed.

98-04 21세기를 향한 韓 · 中 · 日 經濟協力의 새로운 모색/李昌在 編

99-01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Yung Chul Park · Yunjong Wang

00-01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王允鍾 編

00-02 Shared Prosperity and Harmony /Kyung Tae Lee ed.

00-03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Chong-wha Lee ed.

00-04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Il SaKong · Yunjong Wang

00-05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01-0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Yoon Hyung Kim · Yunjong Wang

■ APEC Study Series

00-01 An Analysis of CO_2 Emission Structures of the APEC Economies: Implications for Mitigation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Kihoon Lee · Wankeun Oh

00-02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Byung-il Choi

00-03 A Model Development for Measur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in the Asia-Pacific Region/Chulwon Kim

00-04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Taeho Bark and Hwy-Chang Moon

00-05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00-06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 Sung-Hoon Park

00-07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 Sang-yirl Nam

■ Discussion Papers

00-01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Focussing on Non-OECD Economies of APEC* / Hyungdo Ahn · Junsok Yang · Mikyung Yun

00-02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 Yung Chul Park · Yunjong Wang

01-01 Korea's FTA (Free Trade Agreement)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Chan-Hyun Sohn · Jinna Yoon

■ Working Papers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June-Dong Kim

97-02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 Jaebong Ro · Hyungdo Ahn

97-03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와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 王允鍾 · 李晟鳳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 Inkyo Cheong

97-05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 李晟鳳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 Jong-Bum Kim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 Sang-In Hwang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 Seung-Hee Han · Inkyo Cheong

97-09 IMF 救濟金融事例 研究: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事例를 중심으로 / 金元鎬 外

97-10 韓 · 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 李鍾華

97-11 러시아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度的 與件 / 鄭鎔株

98-01 韓 · 日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 程 勳 · 李鴻培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A perspective / Mikyung Yun

98-0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 · 美 投資協定의 意義와 展望 / 金寬澔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 June-Dong Kim · Sang-In Hwang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Why the Era of Active Policy is Over / Chan-Hyun Sohn etc.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 Chong Wha LEE

98-07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1: 英國 / 申東和

98-08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2: 인도네시아 / 金完仲

98-09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3: 美國 / 朴英鎬

98-10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4: 中國 / 金琮根

98-11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5: 泰國 / 權耿德

98-12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 Hyungdo Ahn · Hong-Yul Han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 金準東 外

98-14 最近 國際金融環境變化와 國際金融市場動向 / 王允鍾 外

98-15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 Yoo Soo Hong

98-16 構造調整과 國家競爭力 / 洪裕洙

98-17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통관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을 중심으로/孫讚鉉·任曉成

98-18 주요국의 투자자관계 관리사례/申東和

98-19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尹美京·朴英鎬

99-01 改革推進 外國事例와 示唆點/金元鎬 外

99-02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蔡 旭·徐暢培

99-03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Inkyo Cheong·Yunjong Wang

99-04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Goals/Inkyo Cheong

99-05 OECD연구시리즈③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 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張槿鎬

99-06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 Korean View/Yunjong Wang

99-07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Myung-Chul Cho·Hyoungsoo Zang

99-08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Hyungdo Ahn

99-09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June-Dong Kim

99-10 OECD연구시리즈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姜聲鎭

99-11 Distressed Corporate Debts in Korea/Jae-Jung Kwon·Joo-Ha Nam

99-12 Capital Inflows and Monetary Policy in Asia before the Financial Crisis/Sung-Yeung Kwack

99-13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Jong-Bum Kim

99-14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Yunjong Wang

99-15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Chong Wha LEE

99-16 OECD연구시리즈④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權 栗

99-17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王允鍾·申東和·李炯根

99-18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Agenda Solutions for ASEM III/Simonetta Verdi

99-19 An Assessment of the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ariff Reductions/Honggue Lee

99-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21st Century/Sung-Hoon Park

99-21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Byung-il Choi

99-22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APEC Economies: A Time Series Analysis/Sun G. Kim·Wankeun Oh

99-23 Ecotech and FEEEP in APEC/Ki-Kwan Yoon

99-24 OECD연구시리즈⑤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尹美京·金琮根·羅榮淑

99-25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Inkyo Cheong

99-26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The Realities and Prospects of Korea's Participation/Jae-Wan Cheong

99-27 OECD연구시리즈⑥ OECD 규제개혁 국별검토: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梁俊晳·金鴻律

99-28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Hyungdo Ahn

99-29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張亨壽·朴映坤

99-30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Inseok Shin·Yunjong Wang

99-31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the 3rd ASEM Summit: Two Scenarios/Chong Wha LEE

99-32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Enterprise Groups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1990s: The Impact of Financial Restructuring on the *Keiretsu* Structure/Yongsok Choi

99-33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Has Exchange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he Crisis? / Yung Chul Park · Chae-Shick Chung · Yunjong Wang

99-34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Industry and Its Relationship with Export Growth / Sang-yirl Nam

00-01 Issues in Korean Trade 1999: Trends, Disputes & Trade Policy / Junsok Yang · Hong-Youl Kim

00-02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Korea's Perspective / Sang-yirl Nam

00-03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 Jong Bum Kim

00-04 East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A Korean Perspective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 Won-Ho Kim

00-05 The Effects of NAFTA on Mexico's Economy and Politics / Won-Ho Kim

00-06 Corporate Leverage, Bankruptcy, and Output Adjustment in Post-Crisis East Asia / Se-Jik Kim · Mark R. Stone

00-07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 Moonsung Kang

00-08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 Doo Yong Yang

00-09 Patent Infringement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R&D and Export Subsidies / Moonsung Kang

00-10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 Jong-Il Kim · June-Dong Kim

00-11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Protection of TRIPS and R&D Subsidies / Moonsung Kang

00-12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Evaluation of Performances and Future Challenges / Seong-Bong Lee

00-13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Sang In Hwang · In-Sok Shin

01-01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FTA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Trade*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01-02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 Wook Chae and Hongyul Han

01-03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 Kyung Tae Lee and Inkyo Cheong

01-04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 Mikyung Yun and Sungmi Lee

01-05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 Se-Jik Kim · Ivailo Izvorski

■ OECD 연구시리즈

00-01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 / 梁俊晳 · 金鴻律

00-02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 宋有哲 · 朴芝賢

00-03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금융 · 자본시장 / 黃祥仁 · 李炯根

00-04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 尹昌仁

01-01 OECD 규제개혁 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 梁俊晳 · 金鴻律

■ 경제개방바로알기시리즈

①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최낙균

②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최낙균

③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김준동 · 강준구

④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정인교

⑤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 송유철

⑥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성봉 · 김관호 · 원신희

⑦ 투자협정 바로알기 / 김관호 · 이성봉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

사점/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朴暎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정과 정부의 지원정책/朴暎坤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鄭銀淑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吳勇錫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李榮洙 · 徐煥周

00-05 日 · 北 經濟協力의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朴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化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金正湜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楊平燮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의 評價와 向後課題/金讚浣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金昌男 · 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高在模 · 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 · 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金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李忠烈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鄭基虎 · 李滿基

01-06 豆滿江 開發 10년의 評價와 展望/沈義燮 · 李光勛

李哲元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91)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졸업(199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cwlee@kiep.go.kr)
著書 『서방의 중앙아시아 석유-가스부문 진출현황』(1997)
『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 통상환경의 변화』(1998) 외

調査分析 01-10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001년 12월 20일 인쇄
2001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발 행 처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 3460-1178 FAX : 3460-1144

인 쇄 오롬시스템(주) 전화 :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89-322-7076-7 94320 값 7,000원
89-322-7044-9(세트)

절취선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 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C	(주간) KIEP 주간세계경제분석	5만원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週報(인쇄물), 전문가풀 토의자료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C 주보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